

한·캐나다 FTA 상세설명자료

2014. 8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 동 설명자료는 한·캐나다 FT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정문의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되었으며 자료상의 용어는 협정상의 법률적 용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Contents · 목차

1	서문, 최초규정 및 정의	7
2	상품무역	9
3	원산지 규정	33
4	원산지절차 및 무역원활화	39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43
6	표준 관련 조치(SRM)	45
7	무역구제	49
8	투 자	53
9	국경간 서비스 무역	65
10	금융서비스	75
11	통 신	83
12	일시입국	87



13	전자상거래	91
14	정부조달	93
15	경쟁정책, 독점 및 국영기업	97
16	지식재산	101
17	환 경	107
18	노 동	111
19	투명성	117
20	제도규정 및 행정	119
21	분쟁해결	121
22	예 외	127
23	최종규정	131

서문, 최초규정 및 정의

◇ 서문 주요 내용

- ▣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대한 선언적 내용 포함
 - 양국의 긴밀한 관계, 무역·투자 자유화의 목적, 무역·투자 장벽의 제거, WTO의 권리·의무 존중 등

◇ 최초규정 및 정의 주요 내용

※ 제1절 최초규정(Initial Provisions)과 제2절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s)로 구성

- ▣ ‘최초규정’에서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타협정과의 관계,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문화 협력, 자동차 분야 무역 및 투자 증진을 규정
 -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 확인
 - 이 협정과의 불일치가 부속서상 환경협정상의 의무 준수를 위한 조치를 배제하지 아니함

- 양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제작 등 문화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

▣ ‘정의’에서는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의 규정

※ 국민(national), 중앙·지역정부 및 주, 영역(territory), 관세, 조치, 기업, FTA에 원용된 각종 협정 등의 정의를 규정

■ 국민(national)의 정의

- 한 국 : 「국적법」상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 캐나다 : 캐나다법상 정의된 캐나다 시민 또는 영구 거주자

■ ‘중앙정부’, ‘지역정부’ 및 ‘주’의 정의

- 양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의

구분	중앙(national) 정부	지역(sub-national) 정부	주(province)
한국	대한민국 정부	미적용	미적용
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	주(provincial), 영역(territorial), 지방(local) 정부	유콘 준주(Yukon Territory),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누나뫼(Nunavut) 포함

■ 영역(territory)의 정의

우리나라	캐나다
1) 대한민국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2)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1) 캐나다 육지영토, 상공, 내수, 영해, 그리고 2) 1982년 UN해양법에 따른 국내법에 의해 결정된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2

상품무역

◇ 개요

- 관세의 단계적 철폐,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금지 (standstill) 등 상품의 시장접근 관련 각종 의무사항은 협정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 및 양허유형은 부속서에 규정
-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1. 관세 철폐 (제23조)

-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각 품목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별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할 의무를 부여

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 (제22조 및 제27조)

- 당사국은 1994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 (제2.2조)

- 당사국은 1994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수출 및 수출용 판매에 대해서 금지 또는 제한 부과 금지 (제2.7조)
- 내국민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의 예외 (부속서 2-가)
 -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및 WTO 협정에 통합된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를 예외로 규정
 - 캐나다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외에
 - ① 원목의 수출, ② 미가공 수산물의 수출, ③ 금지 세번 상품의 수입, ④ 제조업에 사용되는 무수 알코올에 대한 캐나다 소비세, ⑤ 연안무역에서 선박의 사용, ⑥ 와인 및 증류주의 국내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한 조치를 추가 예외로 규정

※ 캐나다의 원목수출 관련, 원목수출 통제절차의 투명성 보장 및 위장된 국제무역 제한수단(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으로의 사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별도의 부속서(부속서 2-나)로 도입

3. 일시 반입 상품에 대한 면세 (제24조)

- 양국은 원산지과 관계없이 일부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 허용
 - ※ 일시 반입 대상 물품
 -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기업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장비
 - 언론매체 또는 음향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장비 및 영화촬영 장비
 - 스포츠용으로 수입되는 상품,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4. 수리 또는 개조후 재반입되는 상품 (제26조)

- ▣ 양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 (자국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
- ▣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의 예외
 - 캐나다 해상법에 따라 등록된 HS 제89류 15개 세번에 대해서는 캐나다 양허표에 따른 관세율 부과 가능
 - ※ (대상 품목) 89011010, 89011090, 89012010, 89012090, 89019091, 89019099, 89020010, 89040000, 89051000, 89052010, 89052020, 89059010, 89059090, 89069091, 89069099

5.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212조)

- ▣ 부속서 2-바에 규정된 일부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 설정된 물량 (trigger level)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형태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Agricultural Safeguard) 발동 가능
 - ※ ASG 발동 가능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 등 7개 품목(20개 세번)
- ▣ 단,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을 통해 인상되는 관세율은 최혜국 (MFN) 실행관세율 초과 불가
- ▣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① 제7장(무역구제)에 따른 세이프가드, ② WTO 협정에 의한 다자 세이프가드, ③ WTO 농업 협정에 따른 농업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시 적용 또는 유지 불가

6.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제2.14조)

- ▣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 주기적으로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 요청시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점검, △이 장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제안 검토, △이 장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등에 대한 공동위원회에의 권고, △관세 또는 비관세 이슈 검토 등을 포함

◇ 상품 양허

- ▣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해 향후 양국간 교역 증진 기대

※ 한·캐나다 교역(2013년) : 총 99억불(對개 수출 52억불, 수입 47억불)

- ▣ 양측은 현재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 (우리) 97.5%, (캐나다측) 97.5% 수입액 기준 : (우리) 98.4%, (캐나다측) 98.7%

〈 한·캐나다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단위 : 백만불, %) 〉

양허유형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품목수	비중	對캐나다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	9,749	81.9	4,205	87.0	6,380	76.4	4,188	64.1
무관세	1,960	16.5	3,266	67.6	5,703	68.3	3,866	59.2
유관세	7,789	65.5	938	19.4	677	8.1	323	4.9
3년	502	4.2	255	5.3	1,401	16.8	2,072	31.7
5년	722	6.1	184	3.8	359	4.3	186	2.9
6년	2	0.0	0	0.0	-	-	-	-
7년	12	0.1	76	1.6	-	-	-	-
10년	612	5.1	29	0.6	2	0.0	0	0.0
세번분리	5	0.0	4	0.1	-	-	-	-
(10년내)	11,604	97.5	4,752	98.4	8,142	97.5	6,447	98.7
10년 초과	77	0.6	52	1.1	25	0.3	84	1.3
세번분리	5	0.0	4	0.1	-	-	-	-
계절관세/ 세번분리	1	0.0	0	0.0	-	-	-	-
현행관세	2	0.0	0	0.0	-	-	-	-
양허제외	211	1.8	22	0.5	181	2.2	0	0.0
총합계	11,900	100	4,831	100	8,348	100	6,530	100

* 품목 수는 HS 2011년, 수입액은 '09~'11년 수입액 평균

- 한-캐나다 FTA는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캐나다는 원자재 등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 형태를 가지는 양국간 교역 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될 것으로 평가
 - 우리의 對캐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관세율 6.1%), 냉장고·세탁기(8%), 타이어(7%) 등을 포함하여 캐나다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5년 이내 관세 철폐
 - 반면, 우리의 對캐 수입 상위 10개 품목(HS 10단위, '09~11년 수입액비중 52.4%)인 유연탄·동광·펄프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한-캐 FTA 체결로 인한 추가 개방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참고 : 2013년 기준, 한-캐 주요 교역품목 (금액, 전체수출입 대비 비중)

- (수출) 승용차(22.3억불, 42.8%), 무선전화기(6.6억불, 12.7%), 자동차부품(2.4억불, 4.5%), 섬유기계(1.2억불, 2.3%), 타이어(1.0억불, 1.9%), 냉장고(0.7억불, 1.3%) 등
- (수입) 유연탄(15.9억불, 33.6%), 펄프(2.9억불, 6.2%),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2.2억불, 4.6%), 칼륨비료(2.0억불, 4.3%), 동광(1.8억불, 3.9%), 원목(1.5억불, 3.2%) 등

- ▣ 우리의 對캐 주력 수출 품목인 가솔린 중대형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냉장고 등에 대해 3년내 철폐를 확보하여, 캐나다 내 수입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 선점
- ▣ 우리의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 농산물 셰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철폐 기간을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 우리는 쌀, 닭고기(냉동), 오리고기(냉동), 탈·전지분유, 치즈, 송이버섯, 밤, 감귤(신선/건조) 등 주요 농산물 211개(품목수 기준 1.8%)에 대해 양허제외

< 한·캐나다 FTA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양허단계	캐나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알루미늄괴, 니켈괴, 동괴, 자동차부품,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원료, 가죽 기타석유화학제품, 염료, 도로, 합성수지, 합성고무, 타이어, 섬유사, 직물, 의류, 의료용전자기기, 의료용기기, 산동물(말, 소, 돼지, 닭, 산양), 산식물(백합,	9,749	즉시철폐	6,380	유탄제, 표면활성제, 자동차부품, 광학기기, 악기, 도로, 필름, 농약, 합성수지, 합판, 건축용 목제품, 기타비금속광물, 타일, 가열난방기, 칼라TV, 진공청소기, 말, 소, 돼지, 닭,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가지(에그플랜트),

우리 양허		양허단계	캐나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p>틀립, 수선화), 캐슈넛(미탈각), 커피(볶지않은 것), 밀(제분용), 메슬린 가루, 당밀, 면류(파스타, 라면), 소크아이언어(냉동), 대서양연어(냉동), 태평양연어(신냉, 훈제), 청어(냉동), 바닷가재(냉동), 굴(밀폐용기) 등</p>	9,749	즉시철폐	6,380	<p>올리브, 수박, 바닐라, 시금치, 파인애플, 천연꿀, 수박, 마태, 매니옥, 아보카도, 라면, 간장, 뱀장어(앵글라종, 활어), 대구(냉동, 냉동피레트), 고등어(냉동), 태평양연어(훈제), 바다가재(산 것, 신냉, 냉동, 건조), 미역(건조), 오징어(훈제) 등</p>
<p>기타목재류, 제재목, 단판, 목재 생활용품, 코르크, 마찰제품, 의료용기기, 밸브, 합성수지 산식물(사과, 복숭아, 배, 굴나무), 한약재(황련, 감초, 사군자), 코코아조제품, 조제식료품(오트밀, 곡물), 빵, 포도주, 마요네스, 연어(활어, 염장, 염수장)</p>	502	3년 철폐	1,401	<p>화장품, 비누, 타이어, 가방, 면직물, 섬유사, 직물, 양탄자, 로프, 의류, 섬유제품, 자동차 부품, 승용차, 화물차, 스피커, 냉방기, 냉장고, 국화, 케네이션, 대두유(조유), 인조꿀, 오이, 감자, 사과, 복숭아, 담배, 포도주, 기타발효주,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기타버섯, 간과 어린(냉동, 건조, 훈제, 염장), 계(산 것, 신선, 냉장,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처리),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품</p>
<p>타이어, 기타화장품, 단판, 기타목재류, 베어링, 침구이불, 자전거부품, 제재목, 건축용목 제품 돼지고기(냉장, 냉동), 면양(냉장, 냉동), 수목류(밤, 잣, 소나무 등), 고사리, 커피(볶음), 스카치 위스키, 오렌지주스(냉동), 토마토주스, 식물성 한약재(계피), 가지미(냉장), 정어리(냉장, 냉동), 고등어(냉장), 콩치(냉장), 삼치(냉장), 병어(냉장), 참다랑어(냉동), 대구(냉동), 농어(냉동), 닭새우류(냉동) 등</p>	722	5년 철폐	359	<p>타이어(승용차, 버스), 안료, 신발, 모자, 가열난방기, 건전지, 축전지, 전구, 철도차량, 화물 자동차, 특장차, 시계, 기타조명 기기, 필기구, 철도차량, 접시 세척기, 맥아엑스, 감자의 분·조분·분말, 토마토주스, 토마토케첩, 딸기잼, 스위트콘, 아이스크림</p>

우리 양허		양허단계	캐나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골분, 돼지고기기타부위 (밀폐용기의 것)	2	6년 철폐	-	-
압착플레이크(귀리의 것), 포도 (조제저장처리), 사과(조제저장 처리), 맥주, 로얄제리(조제 식품용 기타), 먹장어(냉동), 다시마(신선,건조)	12	7년 철폐	-	-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의료용전자 기기, 건축용목제품, 양고기 (산양), 닭고기, 칠면조, 오리 고기, 국화, 백합, 양배추, 무, 아스파라거스, 감자, 고구마, 아몬드, 인삼류, 과일주스(사과, 복숭아, 딸기, 라임, 레몬 등) 갈치(신냉, 냉동), 옥돔(냉동), 조기(냉동,건조,염장), 오징어 (냉동), 게(냉동), 해초류와 기타 조류(마른 것), 미역(건조, 염장)	607	10년 철폐	2	기타차량, 승용차(1인승)
사료(사료용근채류, 보조사료, 사료용조제품), 기타곡분(감자분, 조분과 분말, 감자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5	10년 철폐 (TRQ)	-	-
소식용설육(신선/냉장, 허/냉동, 족/냉동 등), 양파(냉동), 마늘 (냉동), 감귤(기타/신선/건조), 맨더린(기타/신선/건조), 조제 분유(유아용), 볼락(냉동), 아귀 (냉동), 가오리(냉동), 가자미 (냉동), 납치류(냉동), 갑각류 기타(냉동), 개아지살(냉동) 등	49	11년 철폐	25	기타신발, 선박, 해양구조물

우리 양허		양허단계	캐나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민어(활어, 냉동), 고등어(냉동), 꽁치(냉동), 명태(냉동), 꽃게(신냉)	7	12년 철폐	-	-
맥아(북지않은 것)	1	12년 철폐 (TRQ)	-	-
돼지고기(냉장/삼겹살, 냉장/ 기타, 냉동/삼겹살)	3	13년 철폐	-	-
식용설육(기타/냉동), 녹용, 메밀, 보리(맥주맥), 쇠고기 (냉장/뼈없는 것, 뼈채절단/ 갈비, 냉동/뼈없는 것 등), 쇠고기(밀폐용기의 것, 기타조제저장), 팔(기타)	14	15년 철폐	-	-
겉보리, 쌀보리	2	15년 철폐 (TRQ)	-	-
조제육설육(밀폐용기의 것)	1	18년 철폐	-	-
대두(기타) 사과(신선), 배(신선) 혼합조미료, 혼합조미 · 조제품 기타 견과 · 땅콩외 기타의 씨류 (조제저장처리), 과실주스기타, 흰포도주(2리터 이하용기) 계, 새우와 보리새우	10	세번분리	-	-
감자(기타) : 칩용(계절관세)	1	계절관세/ 세번분리	-	-
천연꿀, 대두(콩나물용)	2	현행관세 (TRQ)	-	-
쌀, 쇠고기(냉동/도체와 이분 도체), 닭고기(냉동), 오리고기 (냉동), 탈전지분유, 치즈, 송이 버섯, 표고버섯, 밤, 감귤(신선/ 건조), 인삼, 고추장, 잎담배	211	양허제외	181	치즈, 버터, 밀크와 크림, 펄튼과 그들의 유도체, 알부민,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 ·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
	11,900	총합계	8,348	

◆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1. 공산품(임산물 포함)

□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대다수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철폐

※ 캐나다는 품목수 기준 99.6%, 수입액 기준 98.7%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철폐

※ 우리는 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 기준 99.7%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10년내 철폐

□ 우리의 **對캐나다** 주요 수입품인 유연탄·펄프 등은 이미 무세 또는 낮은 관세 적용으로 한·캐 FTA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유연탄, 펄프, 동광, 원목, 우라늄 등 한국의 **對캐나다** 수입액의 67.6% ('09~'11년 평균 기준)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

〈 한·캐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비교 〉

양허 단계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	9,295	93.4%	3,846,206	93.3%	5,573	81.6%	4,146,357	64.1%
3년	260	2.6%	232,358	5.6%	1,028	3.0%	2,055,050	31.8%
5년	302	3.0%	32,708	0.8%	202	8.1%	179,777	2.8%
(5년내)	9,857	99.1%	4,111,272	99.7%	6,803	99.6%	6,381,183	98.7%
10년	85	0.9%	12,070	0.3%	2	0.0%	33	0.0%
10년 비선형	8	0.1%	161	0.0%				
(10년내)	9,950	100.0%	4,123,504	100.0%	6,805	99.6%	6,381,216	98.7%
11년					25	0.4%	83,590	1.3%
합계	9,950	100.0%	4,123,504	100.0%	6,830	100%	6,464,806	100%

- **캐나다**는 우리의 對개 최대 수출품목('13년 수출 22.3억불, 수출 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내(24개월) 철폐하여 미국·일본 등 현지생산 기업 및 미국·EU 등 FTA 체결국과 동등한 경쟁여건 확보
- **캐나다**는 우리의 5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우리 업체는 캐나다 시장의 약 12%를 점유(미국 현지생산 포함)하고 있으며,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FTA 체결시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 타이어 및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향후 對캐나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부품(6%)에 대해서는 즉시/3년철폐, 타이어(7%) 5년 철폐, 세탁기·냉장고(8%) 등 가전제품 즉시/3년철폐 등으로 합의
 - 섬유 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는 대부분 3년내 철폐로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 기대

※ 무선전화기, 집적회로반도체, 석유제품 등 캐나다의 대한민국 수입액의 59.2% ('09~'11년 평균 기준)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

〈 한·캐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철폐	알루미늄괴, 니켈괴, 동괴, 자동차부품,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원료, 가죽 기타석유화학제품, 염료, 도로, 합성수지, 합성고무, 타이어, 섬유사, 직물, 의류, 의료용전자기기, 의료용기기	9,295	윤활제, 표면활성제, 자동차부품, 광학기기, 악기, 도로, 필름, 농약, 합성수지, 합판, 건축용목제품, 기타비금속광물, 타일, 가열난방기, 칼라TV, 진공청소기	5,573
3년 철폐	기타목재류, 제재목, 단판, 목제생활용품, 코르크, 마찰제품, 의료용기기, 밸브, 합성수지	260	화장품, 비누, 타이어, 가방, 면직물, 섬유사, 직물, 양탄자, 로프, 의류, 섬유제품, 자동차부품, 승용차, 화물차, 스피커, 냉방기, 냉장고	1,028
5년 철폐	타이어, 기타화장품, 단판, 기타목재류, 베어링, 침구이불, 자전거부품, 제재목, 건축용목제품	302	타이어(승용차, 버스), 안료, 신발, 모자, 가열난방기, 건전지, 축전지, 전구, 철도차량, 화물자동차, 특장차, 시계, 기타조명기기, 필기구, 철도차량, 접시세척기	202
10년 철폐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의료용전자기기, 건축용목제품	85	기타차량, 승용차(1인승)	2
10년 비선형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8	-	-
11년 철폐	-	-	기타신발, 선박, 해양구조물	25

〈 한 · 캐나다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 위	우리 양허 (對캐나다 주요 수입품)				캐나다 양허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9-11 평균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09-11 평균	캐측 양허
1	유연탄 (강점결성 코크스용탄)	0	741,355	즉시	가솔린자동차 (1500cc-3000cc)	6.1	1,565,296	3년
2	유연탄(기타)	3	542,140	즉시	전자집적회로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0	569,897	즉시
3	유연탄 (기타 코크스용탄)	0	215,308	즉시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0	438,057	즉시
4	염화칼륨	0	203,037	즉시	기타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품(기타)	0	226,711	즉시
5	동광과 그 정광	0	185,597	즉시	가솔린자동차 (3000cc 초과)	6.1	119,355	3년
6	목재펄프 (기계적 및 화학적 펄핑 공정을 결합한 것)	0	123,297	즉시	세탁기	0	113,896	즉시
7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0	117,957	즉시	증폭기 (모노리식 집적회로)	0	106,733	즉시
8	펄프(표백한 것)	0	117,487	즉시	기어박스	6	103,727	즉시
9	유연탄 (휘발성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2 미만인 것)	0	111,077	즉시	건조기	0	88,381	즉시
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1	96,740	즉시	경질석유 및 조제품(기타)	0	88,100	즉시
	(10대 수입소계)		2,453,994		(10대 수출소계)		3,420,153	
	공산품 수입합계		4,123,504		공산품 수출합계		6,464,806	

2. 농산물

- ▣ 캐나다는 품목수 기준 86.7%, 수입액 기준 99.9%를 5년내 철폐하고, 181개 품목(품목수 비중 13.3%, 수입액 비중 0.1%)을 양허제외

※ (양허제외 품목) 버터·치즈 등의 낙농품 및 닭고기 등의 가금육류 등

- ▣ 우리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서 양허제외, 저율할당관세(TRQ), 농산물세이프가드(ASG),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

※ 기체결 FTA간 10년초과 관세철폐 및 예외취급 비율(품목수 기준) 비교
- (한-캐 FTA) 18.8%(282개), (한-미 FTA) 12.3%, (한-EU FTA) 14.5%

【양허제외 및 현행관세유지】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면제
- 치즈, 분유, 감귤, 고추, 마늘, 양파, 인삼, 고추장, 오리고기(냉동), 밤, 표고버섯 등(195개 세번)도 추가개방 없이 현행관세 유지
-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대두(콩나물콩, 기타), 천연꿀)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량의 저율할당관세(TRQ) 제공

【농산물세이프가드】

-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 등 7개 품목(20개 세번)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계절관세】

- ▣ 칩용 감자는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비성수기(12~4월)에 즉시철폐, 성수기(5~11월)에 15년 비선형 철폐*)

* 이행 1년차부터 7년까지는 현행관세 유지, 이행 8년차부터 15년까지 8단계에 걸쳐 균등철폐

【세번분리】

- ▣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

- 감자(HSK 0701900000)

- 칩용감자는 계절관세
(비성수기 : 즉시철폐, 성수기 : 15년 비선형 철폐)
- 기타 감자는 현행관세 유지

- 사과(HSK 0808100000)

- 후지 품종은 양허제외
-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농업세이프가드 적용)

- 배(HSK 0808201000)

- 동양배 품종은 양허제외
-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농업세이프가드 적용)

- 대두(기타)(HSK 1201009090)

- 대두(장유박용·간장원료)는 즉시철폐

- 기타 대두는 현행관세 유지(TRQ 포함)
- 기타견과류(HSK 2008199000)
 - 볶은 골든 아마씨는 즉시철폐
 - 기타 견과류는 10년철폐
- 과실주스(HSK 2009801090)
 - 크랜베리 주스 및 블루베리 주스는 5년철폐
 - 기타 과실주스는 10년철폐
- 혼합조미료(HSK 2103909030, 2103909090)
 - 성분 중 고추·마늘·양파·생강의 비중이 각각 20% 이상 또는 이를 합쳐서 40% 이상인 품목은 양허제외
 - 기타 혼합조미료는 5년철폐
- 흰포도주(HSK 2204212000)
 - 아이스 와인은 즉시철폐
 - 기타 흰포도주는 3년철폐

〈 한·캐 FTA 농산물 양허수준 비교 〉

양허 단계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철폐	406	27.1%	350,050	53.7%	686	50.1%	29,553	60.1%
3년	186	12.4%	9,052	1.4%	339	24.9%	12,814	26.1%
5년	199	13.3%	34,983	5.4%	157	11.8%	6,714	13.7%
5년+ASG	1	0.1%	99,009	15.2%				
6년	2	0.1%	0	0.0%				
7년	10	0.7%	72,653	11.2%				
10년	406	27.1%	4,385	0.7%				
10년 +TRQ	3	0.2%	4,843	0.7%				
10년 TRQ +ASG	2	0.1%	0	0.0%				
세번분리	3	0.2%	764	0.1%				
(10년내)	1,218	81.2%	575,738	88.4%	1,182	86.7%	49,081	99.9%
11년	42	2.8%	2,019	0.3%				
15년	4	0.3%	0	0.0%				
18년	1	0.1%	0	0.0%				
T R Q	12년	1	0.1%	12,126	1.9%			
	양허제외	2	0.1%	351	0.1%			
	세번분리	1	0.1%	3,622	0.6%			
A S G	13년	3	0.2%	35,017	5.4%			
	15년	10	0.7%	27	0.0%			
	15년 +TRQ	2	0.1%	0	0.0%			
	세번분리	2	0.1%	38	0.0%			
세번분리	2	0.1%	234	0.0%				
계절관세 +세번분리	1	0.1%	0	0.0%				
양허제외	211	14.1%	22,094	3.4%	181	13.3%	44	0.1%
총합계	1,500	100%	651,266	100%	1,363	100%	49,125	100%

〈 한·캐 FTA 농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양허단계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철폐	산동물(말, 소, 돼지, 닭, 산양), 산식물(백합, 톨립, 수선화), 캐슈넛(미탈각), 커피(볶지않은 것), 밀(제분용), 메슬린 가루, 당밀, 면류(파스타, 라면)	406	말, 소, 돼지, 닭,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가지(에그 플랜트), 올리브, 수박, 바닐라, 시금치, 파인애플, 천연꿀, 수박, 마태, 매니옥, 아보카도, 라면, 간장	686
3년	산식물(사과, 복숭아, 배, 굴나무), 한약재(황련, 감초, 사군자), 코코아조제품, 조제식료품(오트밀, 곡물), 빵, 포도주, 마요네스	186	국화, 카네이션, 대두유 (조유), 인조꿀, 오이, 감자, 사과, 복숭아, 담배, 포도주, 기타발효주,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팡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기타버섯	339
5년	돼지고기(냉장, 냉동), 면양(냉장, 냉동), 수목류(밤, 잣, 소나무 등), 고사리, 커피 (볶음), 스카치 위스키, 오렌지주스(냉동), 토마토주스 식물성 한약재(계피)	199	맥아엑스, 감자의 분 · 조분 · 분말, 토마토주스, 토마토케첩, 딸기잼, 스위트콘, 아이스크림	157
5년+ASG	돼지고기(냉동/기타)	1		
6년	꿀분, 돼지고기기타부위(밀폐용기의 것)	2		
7년	압착플레이크(귀리의 것), 포도(조제저장처리), 사과(조제저장처리), 맥주, 로알제리(조제식료품 기타)	10		
10년	양고기(산양), 닭고기, 칠면조, 오리고기, 국화, 백합, 양배추, 무, 아스파라거스, 감자, 고구마, 아몬드, 인삼류, 과일주스 (사과, 복숭아, 딸기 라임, 레몬 등)	406		
10년+TRQ	사료 (사료용근채류, 보조사료, 사료용조제품)	3		
10년+TRQ +ASG	기타곡분(감자분, 조분과 분말, 감자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2		
(10년내) 세번분리	견과 · 땅콩의 기타의 씨류(조제저장처리), 과실주스기타, 흰포도주(2리터 이하용기)	3		
11년	소식용설육(신선/냉장, 허/냉동, 족/냉동 등), 양파(냉동), 마늘(냉동), 감귤(기타/신선/건조), 맨더린(기타/신선/ 건조), 조제분유(유아용)	42		

양허단계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15년	식용설육(기타/냉동), 녹용, 메밀, 보리(맥주맥)	4		
18년	조제육설육(밀폐용기의 것)	1		
12년	맥아(볶지않은 것)	1		
TR 양허제외	천연꿀, 대두(콩나물용)	2		
세번분리	대두(기타)	1		
13년	돼지고기(냉장/삼겹살, 냉장/기타, 냉동/삼겹살)	3		
ASG 15년	쇠고기(냉장/뼈없는 것, 뼈채절단/갈비, 냉동/뼈없는 것 등), 쇠고기(밀폐용기의 것, 기타조제저장), 팔(기타)	10		
15년 +TRQ	겉보리, 쌀보리	2		
세번분리	사과(신선), 배(신선)	2		
(10년초과) 세번분리	혼합조미료, 혼합조미 · 조제품기타	2		
계절관세 + 세번분리	감자(기타) : 칩용(계절관세)	1		
양허제외	쌀, 쇠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닭고기(냉동), 오리고기(냉동), 탈전지분유, 치즈, 송이버섯, 표고버섯, 밤, 감귤(신선/건조), 인삼, 고추장, 잎담배	211	치즈, 버터, 밀크와 크림, 펄프와 그들의 유도체, 알부민,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 :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	181

〈 한·캐나다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순위	우리 양허 (對캐나다 주요 수입품)				캐나다 양허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9-11 평균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09-11 평균	캐측 양허
1	사료용 밀	0	174,891	즉시	기타 파스타 (패키지가 2.3kg을 초과하지 않는 것)	4	5,325	즉시
2	냉동 돼지고기 (기타)	25	99,009	5년 +ASG	기타음료(기타)	11	3,133	3년
3	밀(제분용)	1.8	59,316	즉시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기타)	0	1,797	즉시
4	식물성 유지(조유)	8	44,315	7년	기타빵류(기타)	11	1,717	즉시
5	생모피 (밍크의 것)	3	39,167	즉시	기타조제식료품 (기타)	10.5	1,593	5년
6	냉장 돼지고기 (삼 겹살)	22.5	23,869	13년 +ASG	기타소스류 (기타)	9.5	1,560	5년
7	기타조제식료품 (기타)	8	17,921	7년	기타 방법으로 조제·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기타)	6	1,555	즉시
8	분유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것)	36	16,641	양허 제외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 (맛을 가미한 얼음과 아이스 샤벳)	9.5	1,509	5년
9	소의 기름 (기타)	2	13,930	즉시	기타 버섯과 송로 (기타)	8.43¢/kg 또는 8.5% 양자중 고액	1,476	3년
10	맥아 (북지 아니한것)	269	12,126	12년 (TRQ)	기타 신선과실 (기타)	0	1,343	즉시
(10대 수입소계)			501,184		(10대 수출소계)		21,008	
농산물 수입합계			651,266		농산물 수출합계		49,125	

3. 수산물

- 캐측은 모든 품목(155개 품목)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 對캐나다 수출품목인 훈제 오징어, 연어 가공품의 즉시 관세철폐 및 갑각류(분·조분·펠리트), 계, 간과 어란, 고등어 가공품, 캐비아와 캐비아대용물의 3년내 관세철폐 확보
- 우리는 대부분 품목(품목수 96.8%, 수입액 95.7%)의 관세를 10년내 철폐하였으나, 일부 민감품목(14개 세번)*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하여 보호수단을 확보

* 일부 냉동어류(불낙, 아귀, 가오리, 고등어, 넙치류 등) 및 신선·냉장 꽃게

- 특히,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어, 고등어, 콩치, 명태, 꽃게 등 7개 민감품목은 12년 비선형 장기 관세철폐 설정
- 수입의존도가 높은 계, 새우는 세번분리 방식을 통해 품종별 상이한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

※ 계(냉동) 중 던진니스 크랩(Dungeness Crab)은 3년, 기타는 10년 철폐하고, 새우 중 북쪽분홍새우(Pandalus Borealis)는 5년, 기타는 10년 철폐

〈 한·캐나다 FTA 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

양허 단계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	48	10.7%	8,257	14.8%	121	78.1%	12,484	76.2%
3년	56	12.4%	14,025	25.1%	34	21.9%	3,907	23.8%
5년	220	48.9%	16,810	30.1%				
(5년내)	324	72.0%	39,092	70.0%	155	100%	16,391	100%

양허 단계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7년	2	0.4%	3,577	6.4%				
10년	101	22.4%	7,098	12.7%				
10년 (비선형)	7	1.6%	469	0.8%				
세번분리	2	0.4%	3,267	5.8%				
(10년내)	436	96.8%	53,503	95.7%				
11년	7	1.6%	1,173	2.1%				
12년 (비선형)	7	1.6%	1,216	2.2%				
합계	450	100%	55,892	100%				

〈 한·캐 FTA 수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양허 단계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실뱅장어(활어), 소크아이언어(냉동), 대서양연어(냉동), 홍살치(냉동), 달고기(냉동), 태평양연어(신냉, 훈제), 청어(냉동), 바닷가재(냉동), 성게(산 것, 신냉, 염장, 염수장), 굴(밀폐용기) 등	48	뱅장어(앵귤라종, 활어),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신냉), 눈다랑어(신냉), 넙치(냉동), 황다랑어(냉동), 눈다랑어(냉동), 참다랑어(냉동, 냉동피레트), 청어(냉동), 대구(냉동, 냉동피레트), 황새치(냉동), 고등어(냉동), 농어(냉동), 먹장어(냉동), 홍어(냉동), 명태(냉동 피레트), 태평양연어(훈제), 멸치(건조), 명태(건조), 바닷가재(산것, 신냉, 냉동, 건조), 김(건조, 냉장, 냉동), 미역(건조), 오징어(훈제) 등	121
3년	연어(활어, 염장, 염수장), 참다랑어(신냉), 청어(신냉), 어란(신냉), 검정대구(신냉), 뱀장어(냉동), 청어(건조, 염장, 염수장), 달팽이(신선, 냉장, 냉동, 건조), 홍합(밀폐용기, 훈제) 등	56	간과 어란(냉동, 건조, 훈제, 염장), 게(산 것, 신선, 냉장,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처리),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34

5년	미꾸라지(활어), 갯장어(활어), 봉장어(활어), 잉어(활어), 넙치(신냉), 가자미(냉장), 정어리(냉장, 냉동), 고등어(냉장), 꽁치(냉장), 삼치(냉장), 병어(냉장), 참다랑어(냉동), 대구(냉동), 이빨고기(냉동), 농어(냉동), 닭새우류(냉동) 등	220	
7년	먹장어(냉동), 다시마(신선, 건조)	2	
10년	참다랑어(활어), 남방참다랑어(활어), 방어(활어), 먹장어(활어), 송어(활어), 볼락(활어), 황다랑어(신냉), 뱀장어(신냉), 대구(신냉), 황새치(신냉), 갈치(신냉), 명태(신냉), 방어(신냉), 갈치(신냉, 냉동), 옥돔(냉동), 조기(냉동, 건조, 염장) 등	101	
10년 (비선형)	뱀장어 기타(활어), 농어 기타(활어), 오징어(냉동), 게(냉동), 해초류와 기타조류(마른 것), 미역(건조, 염장)	7	
세번 분리	게(던진니스 크랩:3 / 기타:10) 새우(북쪽분홍새우:5 / 기타:10)	2	
11년	볼락(냉동), 아귀(냉동), 가오리(냉동), 가자미(냉동), 넙치류(냉동), 갑각류 기타(냉동), 개아지살(냉동) 등	7	
12년 (비선형)	민어(활어, 냉동), 고등어(냉동), 꽁치(냉동), 명태(냉동), 꽃게(신냉)	7	

〈 한·캐나다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

순위	우리 양허 (對캐나다 주요 수입품)				캐나다 양허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9-11 평균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09-11 평균	캐측 양허
1	바닷가재 (호마루스종) (냉동하지 않은 것)	20	13,906	3	해초류와 기타조류	0	2,502	0
2	골뱅이	20	7,953	5	기타 어류의 냉동 피레트	0	1,911	0
3	바닷가재 (호마루스종)(냉동)	20	5,575	0	기타 갑각류(냉동) (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5	1,388	3
4	정어리(냉동)	10	4,348	5	어류·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기타)	0	1,284	0
5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 (간유를 제한한다)	3	3,795	5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	7	890	3
6	먹장어(냉동)	10	3,476	7	갑오징어와 오징어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0	835	0
7	홍어(냉동)	10	2,158	10	넙치(냉동)	0	820	0
8	기타 어류(냉동)	10	1,975	10	굴(냉동)	0	807	0
9	기타 연체동물 (냉동)	20	1,953	10	기타 어류의 연육 (냉동)	0	754	0
10	기타 새우와 보리새우	20	1,891	북쪽 분홍 새우: 5년/기 타 : 10년	눈다랑어(냉동)	0	627	0
(10대 수입소계)			47,030		(10대 수출소계)		11,818	
수산물 수입합계			55,892		수산물 수출합계		16,391	

원산지 규정

◇ 개요

- ▣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규정으로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일반 기준을, 부속서인 품목별원산지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에서는 개별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
 - 원산지 일반 기준으로 (i) 완전생산 기준, (ii)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 등)을 규정
 - 그 외 비원산지 재료가 무시할만한 수준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미소기준 및 교역촉진을 위한 누적 기준 등을 포함
 - 품목별원산지기준(PSR)에서는 2012 HS 6단위 5,205개 품목에 대하여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있는 특정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원산지로 인정

◇ 상세 내용

1. 완전생산 기준 (제32조)

- ▣ 양국 영역에서 추출·채취한 광물 및 천연자원, 양국 영역에서 나고

자란(born and raised) 산동물, 양국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grown and harvested) 식물 등을 완전생산품목으로 정의

※ 완전생산기준 : 해당제품의 전부를 완전히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 EEZ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경우, 기국주의 원칙 적용

※ 기국주의 : 당사국에 등록, 등기, 등재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국적을 따름

2. 충분생산 기준 (제33조)

▣ 양국 영역에서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조건과 여타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한 생산을 거쳤다고 간주되어, 원산지 지위를 인정

▣ 또한, 일반원칙으로 최종재와 중간재가 동일한 HS 6단위나, 더 이상 6단위로 분류되지 않는 동일한 4단위로 분류되는 경우, 일정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키면(역외산재료 55%이하) 원산지로 인정

※ 단, 농산물(1류~21류), 플라스틱 일차제품, 섬유·의류는 제외

3. 실질적 변형기준

▣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세번변경 및 부가가치 기준)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되, PSR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세번변경 기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 일정한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세번변경기준은 HS 2단위 변경기준(CC)이 가장 엄격하며, 4단위 변경기준(CTH) 및 6단위 변경기준(CTSH)은 완화된 기준

예)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을 생산한 경우 CTH에 해당

- (부가가치 기준) 생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가치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i) 거래가격/공장도가격 또는 순원가를 기준으로 역외산재료 사용비율의 상한선을 규정하거나, (ii) 집적법을 규정 (순원가를 이용한 계산법과 집적법은 자동차에 한해 적용)
- ※ 순원가 : 총비용에서 마케팅, 로열티, 운송비용 등을 제외한 가격
 집적법 : 원산지재료 가치를 누적하는 방법

4. 중간재 roll-up 기준 (제35.1조)

- 비원산지 재료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업계환경을 고려하여,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생산을 거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하며, 이후 동 상품이 중간재로서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 가치비율은 고려되지 않음

5. 누적 기준 (제37조)

-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서, 일방 또는 양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양국 중 어느 한 쪽 국가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일방 또는 양당사국 영역에서 행해진 생산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생산을 거치고 여타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국 중 어느 한 쪽 국가에서 행해진 것으로 간주

6. 미소기준 (de minimis) (제38조)

-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상품 가치의 10% 이하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미소기준은 원산지기준 판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의 FTA에 반영

- ▣ 제50~제63류(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상품 또는 부분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사의 총중량이 상품 중량의 10%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 제1류~제21류(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가 상품과 다른 소호(HS 6단위)로 분류되지 않는 한, 미소기준 적용에서 배제

7. 대체가능 재료 및 상품 (제3.9조)

- ▣ 대체가능한 재료 및 상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를 인정
 - 대체가능한 재료 및 상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에 대해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 ※ 대체가능 재료 및 상품: 상업적 목적상 상호대체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재료 및 상품

8. 간접재료 (제3.14조)

- ▣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었으나, 완성품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품의 생산과 연계된 설비·건물의 유지 또는 설비의 운영에 사용된 간접재료는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지 않음
 - ※ 간접재료의 예: 연료, 도구, 예비부품, 안전장비 등

9. 통과 및 환적(제3.16조)

- ▣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로 인정
 - 단,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i)제3국에서 운송상 이유로 하역·분할·재선적 또는 물품상태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상의

추가 생산이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ii)제3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으며, (iii)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

10. 품목별원산지기준 (PSR)

-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생산과정 및 원자재 해외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측 민감성을 반영한 품목별원산지기준에 합의
 -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상호누적 인정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에 합의(집적법 35%, 역외산재료 55%이하, 순원가에 의한 역외산재료 65% 이하 중에서 선택)
 - (전자기기 및 기계·보일러)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품에 따라 선택적 부가가치(역외산재료 55%이하) 기준 사용
 - (철강 및 철강제품) 철강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
 - 철강제품의 경우 대부분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일부 품목의 경우 선택적 부가가치(역외산재료 55%이하) 기준 사용
 - (고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일부 품목의 경우 선택적 부가가치 기준(역외산재료 65%이하) 사용
 - (섬유 및 의류) 세번변경기준과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 한·미 FTA의 원사기준(yarn-forward) 대비 완화된 원산지 기준 합의

- **(농수산물)**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며, 신선농수산물(제1류 ~제14류)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기준(2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
- ※ 육류의 경우, 닭고기를 제외하고 도축을 통해 원산지지위를 부여하도록 허용(한·미 FTA와 동일)

4

원산지절차 및 무역원활화

◇ 개요

- ▣ 원산지 절차 분야는 원산지 증명 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원산지 검증방식 및 사전심사, 재심 및 불복청구 등에 대하여 규정
 - 수출자의 편의를 위해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통한 환급 가능
 - 원산지 검증 방식은 방문검증을 포함한 직접 검증 채택
 -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등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 및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한 불복청구권 규정
- ▣ 협력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통일규칙, 관세협력, 위원회, 상품 신속 반출 및 투명성 관련 내용을 규정
 -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관련 사항의 해석, 집행, 운영을 위한 통일규칙 도입 및 이행
 - 무역원활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및 원산지, 통관 절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 설립, 운영
 - 관세법령 공포, 상품의 신속반출, 자동화 등을 통해 세관행정의 투명성 증대 및 무역원활화를 도모

◇ 상세 내용

원산지 증명 방식 (제4.1조)

-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증명서의 서명일로부터 2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 양국간에 제정된 통일규칙(Uniform Regulation) 부속서 가의 원산지 증명서 표준 서식을 이용하여 발급
- 원산지 증명서는 단일 선적 이외에도, 원산지 유효기간 내 상품의 복수 선적에도 적용 가능

특혜관세 신청절차 기타 사항 (제4.1조-제4.5조)

-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수입통관 후 1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사후 환급 신청 가능
- 수출자, 수입자 등은 원산지 증명서 및 여타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
-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 및 각국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검증 (verification) (제4.6조)

-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 서면 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직접 검증 방식 도입
- 수입국 세관당국은 방문검증 전에 수출국 세관당국에 서면 통지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검증 실시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1회에 한해 최대 60일까지 방문검증을 연기 가능하며, 수입국은 이러한 연기를 이유로 특혜관세 배제 불가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30일 이내에 방문검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배제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방문검증에 동행할 참관인 지정 가능

사전심사 및 불복청구 절차 (제4.10조-제4.11조)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의 서면 신청에 의해 수입국 관세당국이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심사 제도 규정
- 관세 사안에 관한 결정에 대해 수입자에게 불복청구권을 보장
 -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서명·신청하거나,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인에게도 불복청구권을 보장
 - 당해 결정을 내린 부서와 독립적인 부서에 의한 행정적 재심,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에 의한 재심 청구 가능

통일규칙 (제4.12조)

-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관련 사항의 해석, 집행, 운영을 위해 양국간의 통일규칙을 마련하고 국내법 등을 통해 이행할 의무 규정

관세협력 및 위원회 (제4.13조, 제4.14조)

- 통관 기술·절차 개선 조치 등에 관한 양국 전문성을 교환하는 등 상품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세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
 - 기술적 협력,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 교환, 공동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 원산지 규정, 절차 및 무역원활화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원산지규정 및 관세위원회(Rules of Origin and Customs Committee) 설치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제4.16조)

- 신속한 물품반출을 통한 양국 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당사국의 간소화된 통관절차 유지 의무 규정
 - 상품 도착전 사전신고 및 부두직통관 제도 등을 규정하고, 긴급 물품에 대한 24시간 통관시스템 적용·유지 노력 등

관세행정의 투명성 증대 (제4.20조)

- 관세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관세법령 및 관세행정 절차의 공표를 의무화
 - 이해관계인의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안내창구(enquiry point) 운영 의무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개요

-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무역에 미치는 SPS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WTO SPS 협정 이행 증진
- SPS 위원회를 설치하여 SPS 관련 조치에 협력하되 관련 분쟁은 FTA의 분쟁해결절차 적용 배제

◆ 상세 내용

1. 적용범위 (제52조),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제53조)

- 양국 간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 조치에 적용
- WTO SPS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 확인

2. 분쟁해결 (제54조)

- FTA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적용 배제

3.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제5.5조)

- ▣ WTO SPS 협정 이행 및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SPS 위원회 설치

※ 위원회 기능 : 양국 SPS 조치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SPS 조치의 개발 및 적용 관련 사안 협의, 협력 프로그램의 계획·이행·검토 조율 및 장려, 양국간에 제기 가능한 SPS 사안 논의 진전사항 검토 등

- ▣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 후에는 1년에 한번 회합

6

표준 관련 조치(SRM)

◇ 개요

- ▣ WTO TBT 협정을 근간으로 표준 관련 조치가 양국 간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절차와 방안 규정
 -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의 제·개정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 동 협정의 이행 및 양국간 협력 증진, 관련 문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상세 내용

1. 의무의 범위 (제62조)

- ▣ 중앙 정부에 한해 적용되나 지역 정부, 지방 정부 및 관련기관에 동 협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정보 제공

2. TBT 협정의 재확인 (제63조)

- ▣ WTO TBT 협정 및 양 당사국이 가입되어 있는 그 밖의 모든 국제 협정 상의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기존 권리 및 의무를 확인

3. 협력 (제64조)

- ▣ 양국 표준화 기관 간 및 적합성 평가 기관 간의 협력 장려,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적합성 평가 기관의 인정 촉진, 다자 및 양자 협정에서 인정한 적합성 평가 기관의 결과 수용 증진
- ▣ 상대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인정 증진을 위한 협정 협상에 참여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기초로서 적절할 경우 국제기준 사용

4. 특정분야 이니셔티브에서의 협력 (제65조)

- ▣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시험 및 인증요건 축소를 위해 아래 분야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사용 장려
 - 의약품 및 의료장비, 통신장비*, 저전압장비**, 목재 건축물 및 관련자재
 - * APEC의 통신장비 적합성 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1998)의 2단계를 이행하기 위해 조치, 협정 발효후 1년내에 한국은 제2단계 이행을 제안하는 입법 상의 변경 공포
 - ** 국가 인증기관이 IECCE-CB 제도의 회원이 되고 상호간 IECCE-CB 시험 증명서를 인정토록 장려
 -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 분야 표준 조치에 대한 기술 임시 작업반 설치

5. 투명성 (제66조)

- ▣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기로 제안한 기술 규정에 대한 규제적 영향 분석서를 상대국에 즉시 제공
- ▣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관련 이해관계 당사국 또는 상대국 국민의 참여 보장

- 비정부기관이 표준과 자발적인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
- ▣ 대중과 상대국에게 표준관련 조치(안)에 대한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 부여

6. 자동차 표준 관련 조치 (제6.7조)

- ▣ (안전기준) 상대국 원산지 자동차 제품이 자국법에 반영된 국제기준 또는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한국) 동 협정 부속서 상의 미국기준 및 한-EU FTA에 반영된 UN규정 등을 충족할 경우 한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캐나다) 캐나다 안전기준 법규에 직접 인용 또는 반영된, 동 협정 부속서 상의 미국기준 및 UN 규정을 충족한 경우 캐나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자동차 제품이 국내법에 따라 인증되고 표시 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 표준 또는 규정의 준수 여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증, 미준수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리콜)토록 공급자에게 요구 가능
- 도로 안전, 공중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긴급하고 결정적인 위험이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리콜)할 것을 요구 가능
 - 단, 상대국과 관련 공급자에게 그 목적 및 이유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사전에 통보
- ▣ (적합 조사) 적합 조사 절차의 근거로서 세계 기술 규정(GTR) 또는

기타 국제표준화기관이 발표한 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시행

- 단, 해당 지침 또는 권고 사항의 사용이 부적합하고, 이를 상대국에 설명한 경우는 제외
- 해당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근거하지 않은 적합조사 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관련 절차 사전 공표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 제공
- ▣ (신기술) 상기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의 유해성 증명하지 않는 한 신기술 또는 신개념을 적용한 제품의 시장 접근 거부나 지연 불가
 - 시장 접근을 거부하거나 시장에서 회수(리콜)할 것을 결정한 경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와 함께 상대국과 수입자에게 결정 내용 즉시 통보

7.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 (제6.8조)

- ▣ 구성된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 설치하여, 매년 최소 1회 회합
 - 구성 : 우리의 경우 국기기술표준원, 캐나다의 경우 외교통상부 공무원
 - 기능 : 협정이행 점검 및 촉진,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문제 처리, 협력 증진, 관련 정보 교환, 조항 검토 및 개정을 위한 권고 개발, 이행에 관하여 공동 위원회에 보고, 작업반 설치 등

무역구제

◆ 개요

- ▣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
-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

◆ 상세 내용

1. 세이프가드 (제1절)

【다자 세이프가드】

- ▣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보유하되,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의 동시 발동은 금지
- ▣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국 수출품을 발동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면제 가능

【양자 세이프가드】

-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결과,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까지 관세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해당 상품의 관세철폐 종료 후 10년’ 또는 ‘가 협정의 발효 후 15년’ 중 보다 짧은 기간 동안 발동 가능
 - 양자 세이프가드 발동기간은 2년이며, 2년간 연장 가능(연장기간을 포함하여 4년이 최대한도)
- 산업피해의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일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보상·보복 규정을 도입하여, FTA 무역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양자 세이프가드 남용을 방지

2.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2절)

-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관련 협의 기회를 부여
 - ※ WTO 반덤핑 협정은 조사개시 전 통보의무만 규정(WTO 반덤핑협정 제5.5조)
-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최소부과(Lesser Duty) 규정 도입
 - ※ WTO 협정상 ‘Lesser Duty Rule’은 바람직한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사항(WTO 반덤핑협정 제9.1조, 보조금협정 제19.2조)

- ▣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약속(Undertakings) 제안이 있을 경우 수입국의 조사당국은 이를 적절히 고려하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수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

※ 약속(Undertakings) : 수출자의 자발적인 약속 제의가 조사당국에 의해 수락될 경우, 관세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는 제도

- 이 제도는 수출자에게 유리한 문제 해결 방식이며,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 받지 않고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3. 무역구제위원회 (제3절)

- ▣ 양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다루기 위해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

- ▣ 무역구제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 ① 양국간 무역구제 법령,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 ②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조항과 약속(Undertakings) 조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 ③ 양 당사국의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증진
- ④ 양국의 무역구제 사안에 대해 정보 교환의 장을 제공
- ⑤ 무역구제 관련 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수립 및 감독
- ⑥ 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이슈, 양국 조사기관의 조사 관행(예 : 이용가능한 사실, 실사 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

※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기관이 피제소 수출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 제출이 미진할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관행

※ 실사 절차(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수출기업의 답변서를 접수한 이후, 답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조사 절차

8

투 자

◇ 개요

▣ 투자챕터는 3개의 절(Section) 및 관련 부속서로 구성

■ 제1절(Section A)은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대우 및 예외를 규정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에 대한 보상, 송금 보장, 투자관련 이행요건 부과 금지,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 제한 금지, 혜택의 부인, 비합치조치* 등

* 투자챕터상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치 조치를 유보목록에 기재

■ 제2절(Section B)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에 대해 규정

■ 제3절(Section C)은 투자챕터상 관련 용어 정의(definition)를 규정

■ 국제관습법, 수용 등 부속서를 별도 규정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

투자챕터 적용 범위 (제8.1조)

□ 외국인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자와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

※ 당사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 행사도 정부 권한 행사로 간주(제3항)

- 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 및 행위, 발효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소급효 배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제8.3조)

□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 하에서 내국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캐나다는 우리 투자자에게 내주민대우(in-state treatment) 부여 약속

※ 내주민대우: 특정주(A주)내에서 FTA 체결 상대국 투자자에게 A주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 이에 비해 타주민대우는 특정주(A주)내에서 FTA 체결 상대국 투자자에게 A주 주민과 동등한 대우는 아니나, 다른주(B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주민대우가 타주민대우 보다 더 우월한 대우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제8.4조)

□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 하에서 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다른 협정에서 이 협정 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 협정의 당사국에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추가적 혜택이 부여

- 다만, 우리나라는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서명되는 협정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미래 MFN)하기로 약속(미래유보)
 - 일부 분야는 미래에 체결하는 협정에 의한 MFN 대우도 제외
 - 우리측은 1) 항공, 2) 수산, 3) 해운, 4) 철도 등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 캐나다측은 투자에 대해서는 미래 MFN을 부여하되, NAFTA 발효 시점('94.1.1)까지 과거 MFN을 적용키로 약속(미래유보)
 - (단, 서비스 분야는 무조건적 MFN 부여)
 - 캐나다측은 1) 항공, 2) 수산, 3) 해운 등 투자 분야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 ※ 상기와 별도로 여타 분야에서도 MFN 대우가 배제되는 특정 조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보에 명시

대우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제18.5조

- ▣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
-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의미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제18.7조

- ▣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요건은 부과 가능

- 단, 그러한 요건이 외국인 투자자의 해당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materially impair the ability)해서는 안됨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제88조)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등에 관하여 아래 특정 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
 - 일정 수준 수출, 일정수준 국내 재료 사용 달성, 국내상품 사용, 수출과 수입간의 연계, 수출과 판매간의 연계, 기술이전, 특정 지역으로의 독점공급 등 7가지
 - 단, 일정 수준의 수출 의무와 기술이전 의무 등은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가능
- 그 외 일정 비율 내국인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연구개발 수행 등 다른 이행요건은 모두 부과 가능
 - 또한, 상기 금지된 이행요건도 유보(부속서)에 기재하는 경우 부과 가능

비합치 조치(Non-conforming Measures) (제89조)

- 유보목록에 기술된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아래와 같이 규정
 - ① 내국민대우(NT), ② 최혜국대우(MFN), ③ 이행요건(PR), ④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등에 대해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협정 부속서 유보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에는 상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서비스·투자 분야 유보목록은 공통으로 작성, 협정의 부속서로 포함
- 주요 유보내용은 서비스 챕터 설명자료 참조

- 또한 정부조달과 보조금에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관련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투자안 환경 (Investment and Environment) 제8.10조

- 챗터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은 투자활동이 환경에 대해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규정
 - 투자 장려를 위해 국내 보건, 안전, 환경 조치로부터의 면제, 일탈을 금지하고, 그 경우 당사국간 협의토록 규정

수용 및 보상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제8.11조

- 정부는 1) 공공목적을 위해 2)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3)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4) 신속 · 적절 · 효과적으로 수용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 또는 국유화 가능
 - 또한,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equivalent) 재산권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
 - “간접수용”이란 직접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

※ 간접수용의 판단 범위 및 예외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수용부속서에서 규정

송금 (Transfer) 제8.12조

- 출자금,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그리고 지체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파산, 지급불능, 예금자 보호, 주식 등의 거래 이전, 형법의 적용, 규제당국의 법집행으로서 금융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 위한 경우
- ※ 송금보장 조항의 예외로서 외환위기 시 자본거래 통제 등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예외철폐에 규정)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제8.14조

- ▣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방 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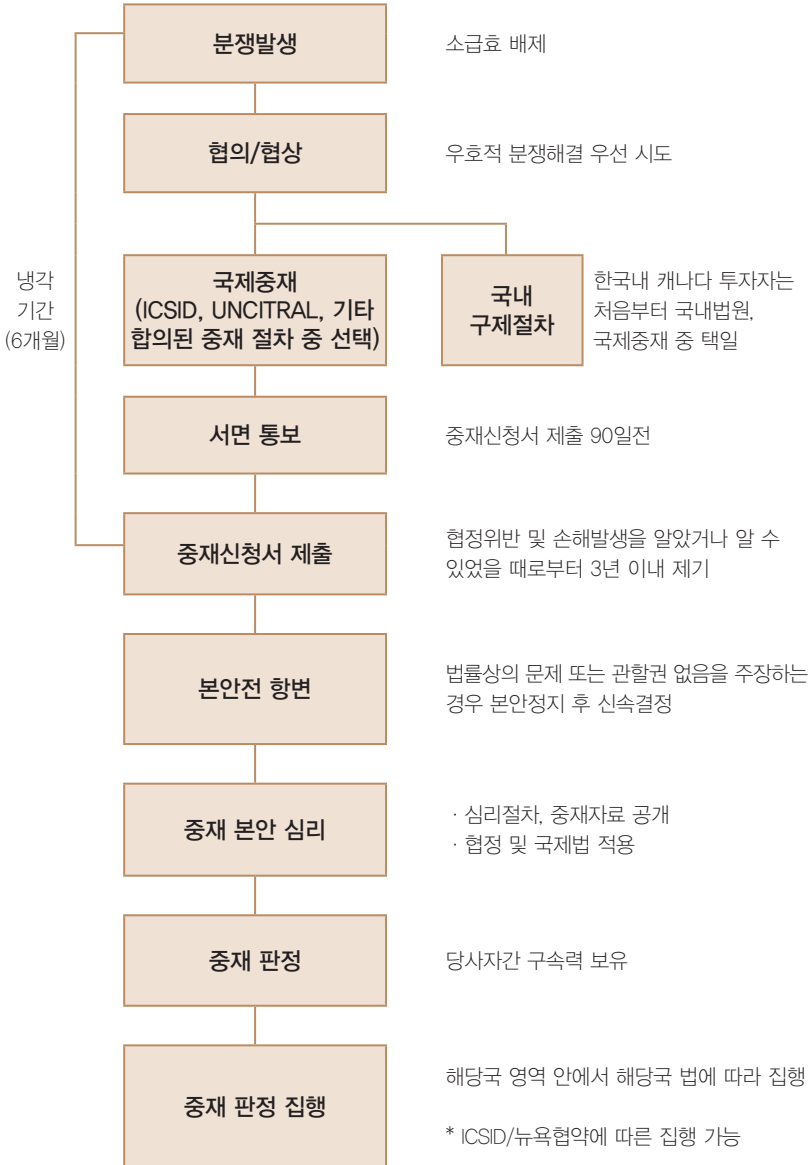
-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1절의 협정상 의무*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 예외: 제8.10조(투자와 환경), 제8.16조(기업의 사회적 책임)
- ▣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제8.25, 8.26, 8.27조)
-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지명하고, 의장중재인이 되는 나머지 1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선임

- 단, 중재 제기 후 9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ICSID 사무총장은 제3국 국적을 가진 자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임
- ▣ 이용 가능한 중재 기관 · 절차 (제8.23조)
 -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World Bank 산하 기구로서 회원국(우리나라와 캐나다 포함)에게 투자자-국가간 분쟁절차를 제공
 - ※ ICSID 추가절차규칙: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절차의 관할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모국과 피청구국이 모두 ICSID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하는 등 협약 제25조에 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반면, 양국 중 일방이 ICSID 협약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중재절차 진행 가능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중재절차 및 규칙을 규정
 -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제3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

중재 청구

- ▣ ①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의 손실에 대하여 직접 중재 청구(제8.18조) 또는 ② 투자기업을 소유, 통제하는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을 대리하여 중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8.19조)
- ▣ 중재의 병합(제8.28조)
 - 동일한 사안으로 다수 투자자가 각각 별개의 ISD를 청구한 경우, 정부는 그러한 중재사건들을 강제로 병합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 정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중재판정에서 대응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ISD 절차 개요 〉



국제 중재와 국내 제소 절차와의 관계(제822조)

- ▣ 투자자는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계속하지 않겠다는 서면포기서를 제출해야 함
- ▣ 단, 캐나다 투자자는 협정상 의무 위반의 경우,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 제소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 제소가 불가능(부속서 8-다)
- ▣ 한국인투자자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절차 개시 후에는 캐나다 법원 제소가 불가능하나, 캐나다 법원 제소 후에는 동 캐나다 국내법원 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국제중재절차 개시 가능

중재 절차

- ▣ 중재 절차의 투명성(제8.35조)
 - 중재심리 및 제출 서류를 모두 일반에게 공개
 - 단, 비밀정보는 국내 법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보호되도록 규정
- ▣ 제3자 의견 제출(제8.36조)
 - 중재재판부는 분쟁 당사자와 협의후 시민단체 등 제3자 의견 제출을 허용 가능
- ▣ 중재언어(제8.33조)
 - 우리나라가 분쟁당사국인 경우 영어 및 한국어, 캐나다가 분쟁 당사국인 경우 영어 및 불어를 중재절차(심리, 결정, 판정 등)의 공식언어로 사용

▣ 준거법(제8.37조)

- 본 FTA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중재판정 (제841조)

▣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binding and final)

-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와 적용가능한 이자 및 재산의 원상회복만으로 한정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명령은 불가

◇ 정 의 (제8.45조)

▣ 투자

-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며, 자본 또는 기타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 등과 같은 투자의 성격을 가진 아래 자산을 의미

- ① 기업
- ② 주식, 증권, 기타 기업의 지분참여 형태
- ③ 채권, 회사채, 또는 기타 채무증서, 대부
- ④ 선물, 옵션, 그리고 기타 파생금융상품
- ⑤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계약

⑥ 지식재산권

- ⑦ 기타 유형 또는 무형,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관련 재산권*

* 시장점유율, 시장접근, 기대이익, 이윤창출 기회는 그 자체로서 투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각주 추가(각주33)

- 그러나, 본 협정의 목적상 투자의 성격을 가지는 대부가 아니라면 순수하게 상업적 거래로 인한 대금청구권은 투자가 아님을 규정

▣ 투자자

- 일방의 국가, 공기업, 국민 또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영토내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경우를 의미
 -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 간주

◇ 부속서

▣ 수용부속서 (부속서8-나)

-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간접수용의 판단법리를 규정
- 간접수용의 인정범위가 더욱 제한될 수 있도록, 동 수용부속서상 간접수용 판단법리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 목적의 예시에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포함

▣ 조세 부속서 (부속서22-가)

-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두어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 조세 부속서의 주요 내용
 -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과 원칙에 부합된 조세조치와 비차별적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조세당국의 정책적 권한을 보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 개요

▣ 협정문의 적용범위 (제9.1조)

- 양국 간 서비스 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모든 조치

– 단,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베팅서비스,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정부보조금, 항공운송서비스, 정부제공서비스 등은 제외

※ 도박·베팅서비스 관련 예외는 부속서한(side letter)에 명시

※ 금융서비스 및 정부조달은 별도 챗터에서 논의

▣ 협정문상의 주요 의무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MA) 제한조치 도입금지, 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가 있으며, 그 외 국내 규제, 자격상호인정 및 임시면허, 지불 및 송금 등을 규율

▣ 서비스/투자 통합유보

-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투자 챗터와 서비스 챗터의 주요의무*에 위배되는 현존 및 미래의 비합치 조치를 부속서에

유보목록으로 명시

* 투자 철폐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이행요건(PR) 부과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국적요건 부과 금지

* 서비스 철폐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MA) 제한 금지, 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

-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각각 미국·EU 등과 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투자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캐측은 투자*와 관련하여 NAFTA 발효시점('94.1.1)까지의 과거 MFN을 부여

*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점에 관계없이 과거 MFN 부여

◇ 상세 내용

일반적 의무

■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제9.2조)

-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최혜국 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제9.3조)

- 동종의 상황에서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시장접근(Market Access)(제9.4조)

- ①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②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제한, ③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의 제한, ④고용인의 총수 제한, ⑤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 현지주재(Local Presence)(제9.5조)

-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혹은 거주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 비합치 조치(Non-Conforming Measures)(제9.6조)

- 상기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보목록에 명시
 - ※ 현재유보(Annex I) 또는 미래유보(Annex II)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상기 4대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 (Negative 방식)

참고 : 유보의 종류

- ① 현재유보(Annex I)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됨
 - ※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 (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조정하거나, 30%를 40%로 상향 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② 미래유보(Annex II)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 ※ 그러나, 상기 4대 의무와 무관한 비차별적인 규제(예: 면허, 허가 인가요건 등)는 “국내규제” 조항에 의거, 국내정책 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유지·신설·개정할 수 있음

국내규제 (제9.7조)

- 서비스공급과 관련 적법한 신청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인에게 합리적 기간 내에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할 의무

-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에 따른 국내규제 관련 교섭이 타결·발효시 관련 규정의 보완을 위해 공동으로 검토

자격인정 (제98조) 및 임시면허 (제99조)

- 특정 국가 또는 비당사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자격·면허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당사국에게는 이와 같은 상호인정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의무와 자격 상호인정 현황에 대해 정보 교환의 의무 규정
-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에 대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3개 서비스 분야 (부속서 9-나)

- 양국이 합의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자격에 대한 임시면허 부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장려
- 자격상호인정 또는 임시면허 절차 수립시 협상 절차(협상의 개시, 결과 보고, 후속조치), MRA 내용 등과 관련한 지침 포함 (부속서 9-다)

※ 다만, 동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MRA 협상주체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임을 부속서에 명시

혜택의 부인 (제9.10조)

- ①협정당사국과 정상적 경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제3국인이 소유하는 타당사국 기업, 또는 ②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

지불 및 송금의 자유 (제9.11조)

-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관한 모든 지불과 송금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허용

※ 지불이나 송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유 : ①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②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및 취급, ③법 집행이나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의 기록 또는 보고, ④형사범죄, ⑤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준수 보장

서비스 · 투자 통합유보 (부속서 1.11)

- 서비스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직 서비스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방 추진

※ 우리측 유보 개수 : 총 84개 (현재유보 43개, 미래유보 41개)

※ 캐측 유보 개수 : 총 40개 (현재유보 27개, 미래유보 13개)

- 문화 서비스 예외

- 문화산업 예외(제22.6조)에 따라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유보는 포함하지 않되, 문화산업 정의*로 포괄할 수 없는 유보는 유지

* ①서적·잡지·정기간행물·신문의 출판·배포·판매, ②영화·비디오의 제작·배포·판매·상영, ③오디오·비디오 음악의 제작·배포·판매·상영, ④음악의 발행·배포·판매, ⑤라디오 통신, ⑥라디오·텔레비전·케이블 방송사업, ⑦위성 프로그램 및 방송 네트워크 서비스 (제22.8조)

- 유보목록 작성 범위 (지방정부 조치)

- 캐나다 지방정부의 비합치 조치는 현재유보로 기재되어 자유화 후퇴방지 매커니즘(Ratchet Mechanism)이 적용

※ 다만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캐측은 예시적 목록의 주정부 비합치 조치를 나열

- 특정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가 서비스 공급자, 투자자, 적용대상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동 조치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추가적인 단계의 적절성 판단 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규정(부속서 9-가)

【투자 관련 주요 유보】

- ▣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 가능
 -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NT) 및 이행요건(PR) 의무에 반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
- ▣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제한
 -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유보 기재
 - * 법집행, 교정서비스 등 정부가 비경쟁적, 비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단, 우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동 유보 적용 제외

【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 ▣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유보
 - 공교육(유·초·중·고)·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도·전기·가스·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 다만,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관련법령의

수준에서 개방하고, 원격교육은 비학위 성인교육에 한하여 개방

- 전기·가스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및 산업환경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수준 유지(현재유보)

▣ 전문직서비스(법률·회계·세무)의 단계적 개방

- 캐나다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캐나다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세무 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 추진

참고 : 전문직서비스 단계적 개방 주요내용

〈법률〉

- 1단계(발효) : 외국법 및 국제공법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 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 3단계(발효 후 5년내) :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합작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

〈회계·세무〉

- 1단계(발효) : 외국회계·세무 자문 허용, 외국 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 후 5년내) :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

▣ 통신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9% 유지
- 협정 발효 후 2년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되, 국내 핵심기간망을 보유한 KT·SKT는 제외

- 공익성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간접투자를 허용
-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 가입자 기반 비디오 서비스(예: IPTV) 분야를 미래유보함으로써 자율적 규제권한 확보
 - ※ 가입자 기반 비디오 서비스 : 당해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 포함)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 포함
 -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 ※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타입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및 기타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단, 방송서비스와 가입자기반비디오서비스는 제외)
- 기타 문화 서비스
 - 뉴스 통신 서비스
 -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 25% 미만 유지, 외국뉴스통신사 지사·지국의 국내 설립은 기사 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현재유보)
 - 시청각 서비스
 - 시청각 공동제작, 국내 영상물 인정 기준에 대한 유보 등(미래유보)
 -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
 -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발굴·평가·매매 등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복원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유보(미래유보)
 - 신문 발행 서비스
 - 여론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유보(미래유보)

■ 기타

■ 농축산물 유통 및 저장·창고 서비스

- 농축산물 위탁중개·도매·소매 서비스 분야에서 쌀, 인삼, 홍삼에 대해 미래유보
- 저장·창고 서비스 관련 농축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 부동산 서비스

- 이미 대외개방 되어있는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현재유보 기재를 통해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여타 분야(개발, 임대, 관리, 공급)에 대해서는 미래유보

■ 육상·철도·해상운송 서비스

-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시내·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추후 국가 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
- 화물 육상운송도 정부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화물 운송 시장의 공급 과잉시 제반조치 도입 권한 확보
- 철도운송 관련, 한·미 FTA 등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기존('05.6.30일 이전)에 운영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외국에 개방하지 않음

※ '05.7.1일 이후 노선에 대해서는 경제적수요심사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

- 해상운송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여객운송 및 연안해운 서비스를, 캐나다는 연안해운 및 피더서비스를 미래유보

금융서비스

◇ 개요

- ▣ 금융협정이 적용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제10.1조 1항)
 - 금융협정은 ①상대국의 금융기관, ② 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및 투자자 그리고 ③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당사국의 법령, 관행 등에 대해 적용
- ▣ 금융협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 (제10.1조 3항)
 - 공공퇴직연금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및 법정사회보장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 중앙은행(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예: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및 국가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금융기관(예: 수출입은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 상세 내용

일반적 의무

-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제10.2조)
 -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 그에 대한 투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금융기관, 그에 대한 투자,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최혜국 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제10.3조)
 - 동종의 상황에서 제3국의 자국의 금융기관, 그에 대한 투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금융기관, 그에 대한 투자,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시장접근(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제10.4조)
 - ①금융기관의 수 제한, ②금융서비스 거래·자산의 총액 제한, ③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총 산출량의 제한, ④고용인의 총 수 제한, ⑤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제10.8조)
 -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①고위경영자 또는 핵심 직원의 국적 제한, ②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에 대한 국적·자국 거주요건의 부과 금지

신금융서비스의 조건 (제106조)

※ 신금융서비스 :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

- ▣ 신금융서비스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허용
 - ①당사국의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 ②추가적 입법행위 없이 신금융서비스가 당사국 국내법상 허용될 것, ③해당 상대국의 금융기관이 당사국에 상업적으로 주재할 것

금융건전성 제도의 도입 가능성 (제10.10조)

- ▣ 각 국가가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건전성제도는 언제라도 도입 가능
 -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기관 등의 건전성 제고, 금융제도의 무결성·안전성 보장 등을 위한 제도를 포함하는 건전성 목적 조치
 - 예금주, 주주, 금융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제도
 -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단기 세이프가드 (제10.10조, 제224조)

- ▣ ‘단기 세이프가드’는 다음의 경우 발동할 수 있음
 -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 양 당사국 간 지급 및 자본 이동이 해당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단기 세이프가드는 다음의 조건을 따라야 함

- ① 발동기간이 1년 이내일 것
 - ※ 단, 필요시 협의 거쳐 연장 가능
 - ② 몰수적이지(confiscatory) 않을 것
 - ③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금지
 - ④ 외환규제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자산의 운용에 대한 제약 금지
 - ⑤ 불필요한 경제적 손해를 피해야 하며, 경제여건 개선시 점진적 해제
 - ⑥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의무
 - ⑦ 신속하게 공표
- 또한 경상거래의 경우 IMF상 절차를 따르고 캐나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및 송금에는 단기 세이프가드 미적용

국경 간 금융서비스의 개방범위 (부속서 10-가)

-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란 캐나다(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캐나다)에 지점·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양국은 (1)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와 (2)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에 한정하여 개방하기로 합의

* 예) 해상, 상업적 항공, 수출입적하보험 등

** 예) 보험계리, 손해사정, 투자자문, 기업구조조정자문 등

〈 양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개방범위 〉

분야		우리나라	캐나다
보험	(1) 해상·항공·우주보험	○	○
	(2) 수출입적하보험	○	○
	(3) 재보험	○	○
	(4) 보험 중개·대리	(1)~(3) 관련 보험에 한정	(1)~(3) 관련 보험에 한정
	(5) 보험부수서비스*	○	○
은행 기타 금융	(1) 금융정보 제공	○	○
	(2) 금융정보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즉시 개방	즉시 개방
	(3) 은행 기타 금융 부수서비스**	동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한 한도에서 개방	전면 개방

* 보험자문서서비스, 보험계리서비스, 위험평가서비스, 손해사정서비스 등

**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자문, 인수·구조조정·전략수립 자문 등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의 역외제공 (부속서 10-나 제1절)

□ 포트폴리오 운용의 해외위탁 문제는 당사국의 투자펀드 자산을 해외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게 위탁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

- 우리나라 현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외화 표시자산의 경우 해외 운용위탁을 허용
- 원화표시자산의 경우 현행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위탁가능

*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로서 원화로 표시된 자산(국내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원화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외화로 표시된 자산(호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외화자산 포트폴리오라 함.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및 소비자 보호 (부속서 10-나 제3절)

- 금융정보 처리의 해외 위탁을 허용하도록 규정
 - 한편,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한다고 하여 금융정보의 생성·저장을 위한 IT설비, 금융 전산망 등 본질적 요소들의 해외이전 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아님.
- 또, 아래와 같은 일정 조건하에서 개방
 - ① 소비자 민감 정보 보호
 - ②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
 - ③ 해당 위탁 금융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우리 금융 당국의 권한 확보
 - ④ 적절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등의 조건은 명문화

국책금융기관의 취급 (부속서 10-나 제4절, 부속서 Ⅲ)

- 국책금융기관을 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거나 그에 대한 현재의 특별 대우를 유보목록에서 기재
 - 한·캐 FTA 적용이 배제되는 국책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우정사업본부
 - 한·캐 FTA는 적용되나 내국민대우에 대해 유보하여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국책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금융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부속서 Ⅲ)

※ 금융서비스 관련 유보내용은 현행 관련 법령내용 수준으로 반영

- **방카슈랑스 판매방법의 제한 유보**
 -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 관련, 영업직원의 수, 동일 보험회사 상품의 판매비율 제한 등을 유보함.

- **국내 은행 지분소유 제한**
 - 국제적으로 신용력있는 은행만 10% 이상의 국내 은행 지분 취득이 가능하도록 유보함.

- **외국은행 지점의 개별인가**
 -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신설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

- **증권·선물시장의 설립 및 운용기관 제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한해 증권·선물시장의 설립 및 운용 가능

- **한국거래소·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제한**
 - 미래에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보

통신

◇ 개요

- ▣ 통신 서비스는 그 자체가 서비스 교역활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수단
 - 이에 따라, 통신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은 서비스 장(章)에서 다루고, 통신 장(章)은 경제활동의 토대로서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서비스 교역의 토대가 되는 통신 서비스 관련,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상세 내용

협정 적용범위 (제11.1조)

- ▣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용

*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및 부가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 단, 방송 또는 케이블 배급 등을 포함한 통신의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적용 배제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제112조)

- 유보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상대국 사업자가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
- 단, 당사국은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 가능
-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 접속을 위해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 사용요건, 통신서비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

허가절차 (제113조)

- 공중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허가절차 및 관련 요건을 공개하며, 합리적인 시한 내에 신청에 대해 결정 및 요청시 거부에 대한 사유를 제시

지배적 공중통신 사업자의 의무 (제114조)

-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지배적 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당사국이 보장 또는 적절한 조치를 유지

※ 지배적 사업자(major suppliers):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시내통화의 KT나 이동통신의 SKT가 해당

■ 교차보조 행위 등 반경쟁적인 행위 금지

※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익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 상호접속을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망의 모든 지점에서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한 조건(기술표준·규격 등)으로 제공
-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를 공개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표준 상호접속 제안을 공개하도록 보장

기타 규정 (제115조~11.12조)

- (보편적 서비스)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그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는 당사국이 규정할 권한 보유

* 산간 오지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

- (희소자원의 분배) 주파수, 번호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조치는 시장접근 제한 조치로 간주되지 않으며, 당사국은 공중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정책 수립 권한 보유

- (규제기관) 통신규제기관이 공중통신 망 또는 서비스, 부가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동 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
- (통신 분쟁해결) 통신규제기관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 신청, 재고 및 사법적 재심 요청 가능

■ (투명성)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규정 제정 관련 의견 수렴 등에 있어서 투명성 보장

■ (규제적용 면제) 일정한 경우* 통신규제기관은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을 자국 법이 규정하는 한도에서 면제 가능

* ①규제의 집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관행 예방에 불필요, ②규제의 집행이 소비자의 보호에 불필요, ③규제적용 면제가 공공이익에 합치

■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 의무 부과 금지

■ 대중에 대한 일반적 공급, 서비스 효율의 비용상 정당화, 서비스 효율표 제출, 자사 망의 특정 고객과 연결, 공중통신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 준수

■ 단, 반경쟁적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기 조치 가능

※ 부가서비스: 통신망에서 기본적인 서비스에 추가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일례로, 날씨·관광 음성 정보 제공 서비스 등

일시입국

◇ 개요

- ▣ 상호주의 기반에서 상대국 자연인에 대한 입국 허용 조치의 원활한 처리 및 일시입국 관련 기준·절차의 투명성을 명시하되, 국경 보장 및 국내 노동력 보호 필요성도 인정
- ▣ 적용범위, 일시입국의 허용, 분쟁해결, 투명성 등 총 8개의 조항과 1개의 부속서(Annex) 및 2개의 부록(Appendix)으로 구성
 - 양측은 상대국의 상용방문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기업내 전근자, 전문가(독립전문가 및 계약서비스공급자), 배우자에 대해 약속
 - 부록에서는 상용방문자 및 전문가의 양허직종을 나열

◇ 상세 내용

협정문 주요 내용

가. 일시입국의 허용 (제12.3조)

- ▣ 각 당사국은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연인이 일시입국에 적용

가능한 당사국의 공중보건, 안전 및 국가 안보 관련 출입국 조치를 준수할 경우 일시입국을 허용

- ▣ 진행 중인 노동분쟁에 연관되고 그러한 노동분쟁의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일시입국의 거부 가능

※ 다만, 그러한 이유로 노동 허가 또는 승인 거부시 거부 사유를 해당 기업인에게 통보해야 함

나. 정보 제공 (제12.4조)

- ▣ 협정 발효일 이후 이 장에 관련된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관련 자료를 수집·유지하고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다. 접촉선 (제12.5조)

- ▣ 양국은 접촉선을 지정, 최소 연 1회 회합하여 관련 일시입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 장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

라. 분쟁 해결 (제12.6조)

- ▣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거부에 관해, ①그 사항이 반복된 관행(pattern of practice)과 관련이 있고, ②해당 당사국의 기업인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이 협정의 분쟁해결규정(제21장)에 의한 절차 적용 가능

일시입국 대상자 구분 및 입국허용 기준 (부속서 12-가)

구분	요건 및 내용
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록 12-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인으로서,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는 자 • 제한된 영업 활동을 위한 보수의 일차적 소득원이나 주된 영업소 및 실제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한국 밖에 있는 자 • 당사국은 사전 허가절차, 노동자격 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으며, 수량 제한을 부과·유지할 수 없음
무역업자 및 투자자 (Traders and Inves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나 임원 또는 핵심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거나, 투자운용을 설립·개발·관리하거나 투자에 자문 또는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으로서,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는 자 • 당사국은 노동자격 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으며, 수량 제한을 부과·유지할 수 없음
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입국 신청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1년 동안 고용된 한국 영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는 자 • 당사국은 노동자격 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으며, 수량 제한을 부과할 수 없음
전문가 (Profession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록 12-가-2에 규정된 직업의 전문가로서,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는 자 • 당사국은 사전 허가절차, 노동자격 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으며, 수량 제한을 부과·유지할 수 없음
배우자 (Spo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무역업자 및 투자자, 기업내 전근자, 전문가의 배우자로서,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고 관련 고용 요건에 합치하는 자 • 당사국은 사전 허가절차, 노동자격 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으며, 수량 제한을 부과·유지할 수 없음

상용 방문자 및 전문가 목록 (부록 12-가-1,2)

- ▣ (상용 방문자(부록 12-가-1)) R&D, 제조·생산, 마케팅, 판매, 유통, 판매/임대 후 서비스, 일반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기업인
- ▣ (전문가(부록 12-가-2))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s) 및 계약서비스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로 구분하여 나열

※ 전문가는 계약서비스공급자(CSS)와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로 구분되는 바, CSS는 서비스 수출국 법인 소속 자연인을 의미하며, IP는 법인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을 의미

- 독립전문가 : 건축사, 엔지니어, 경영 컨설턴트, 의사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건축사, 엔지니어, 경영 컨설턴트, 의사
외 컴퓨터 프로그래머, 과학자, 원예가 등 다양한 직종 포함

전자상거래

◇ 개요

- ▣ 전자상거래 발전과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 ▣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송되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 관행 유지

◇ 상세 내용

1.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제133조)

-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요금 부과 면제

2. 개인정보 및 소비자 보호 (제134조 및 제136조)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하고 관련 국제 기준 고려
- ▣ 소비자를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유지 및 도입의 중요성을 인정, 관련 경험에 대한 정보 교환

3. 종이 없는 무역 행정 (제135조)

- 당사국은 전자적 형태의 무역행정문서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법적 효력을 종이문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 노력

4. 협력 (제137조)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의 이용 촉진을 위한 협력,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 지역 및 다자 포럼 참여 등의 중요성 인정

정부조달

◇ 개요

- ▣ 캐나다와의 FTA를 통해 정부조달시장의 상호 개방을 확대
 -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 대비 상호 높은 수준으로 중앙정부기관 대상 조달시장을 개방
 - 구체적인 규율에 있어서는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을 준용
- ▣ 우리의 관심사인 학교급식과 국내 중소기업 관련 조달 우대에 대한 예외도 확보

◇ 상세 내용

기본 권리 및 의무 (제142조)

- ▣ FTA의 체결이 양국 간 기존 WTO 정부조달 협정상 권리·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규정

적용범위 (제143조)

- ▣ (적용범위)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권리·의무를 FTA에 준용

- FTA의 정부조달은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이 양국 간 발효하는 시점부터 적용
- ▣ (예외)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 중 개도국 예외, 국내적 심사절차, WTO 정부조달 위원회 등의 규정은 미적용

개방 수준

– 중앙정부를 개방하되 WTO 정부조달협정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개방

	한·캐나다 FTA	GPA(한국 양허)	개정 GPA(한국 양허)
상품 및 서비스 조달	중앙정부(7만 SDR 기준) 한 : 1억원 이상 캐 : 10만 캐불 이상	중앙정부 : 13만 SDR 이상	중앙정부 : 13만 SDR 이상
건설조달	중앙정부 : 500만 SDR 이상	중앙정부 : 500만 SDR 이상	중앙정부: 500만 SDR 이상

* 1 SDR = 1745.38원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13.1.1일 ~ '15.1.1일)

학교급식 및 중소기업 관련 예외

(중소기업: 부속서 14-가, 학교급식: 부속서 14-마)

- ▣ 한국의 학교 급식 및 국내 중소기업의 조달 참여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캐나다 FTA 정부조달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
 - 학교급식과 관련한 예외를 명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구매하는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 가능
 - 국내법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 관련 조치를 예외로 인정

정부조달위원회 (제14.6조)

- ▣ 한-캐나다 FTA상 정부조달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조달 위원회를 설치

* 협력촉진, 정보교환,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운영 관련 사안 등

- FTA 정부조달에 관련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 외교통상개발부(캐나다)가 정부기관을 대표하는 연락처로서 기능

기 타

- ▣ 협정의 수정 및 정정(제14.4조)

- 어느 한 국가가 정부조달 양허 기관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타방 국가에 통보*해야 함

* 통보 내용 : 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증거(양허 철회), 예상 결과에 대한 정보(양허 수정)

- 양국은 협의를 통해 이의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양허기관을 수정하는 경우 등에는 적절한 보상 방안을 검토

- ▣ 추가협상(제14.5조)

- 추후 양국 중 어느 국가가 제3국에게 한-캐나다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추가 협상에 착수해야 함

경쟁정책, 독점 및 국영기업

◇ 개요

- ▣ 관련법과 정책 도입을 통해 당사국 내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및 공기업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 마련

◇ 상세 내용

1. 경쟁법과 경쟁 정책 (제15.1조)

- ▣ 반경쟁적 기업 활동 금지 조치를 도입, 유지하고 관련 조치의 효과성을 협의
- ▣ 반경쟁적 기업활동 금지 및 집행 조치는 투명성, 비차별, 절차적 공정성에 합치되도록 하되 그 예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필요성을 평가
- ▣ 효과적인 경쟁법 이행 문제에 대한 협력 및 의무 규정
- ▣ 경쟁법과 경쟁 정책 관련 문제는 FTA 협정상의 분쟁해결 이용 불가

2. 독점 (제152조)

- 당사국의 독점 유지 혹은 지정 인정
 - 독점 지정이 상대국의 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가능하면 사전에 서면 통보
- 민간 소유 독점이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도록 행동하고,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 또는 판매할 때 오직 상업적 고려에 따라 행동
 - 적용대상투자, 상대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 제공
 - 비독점 시장에서 반경쟁 관행에 관여하기 위한 독점적 지위 사용 금지
- 정부조달에는 미적용

3. 공기업 (제153조)

- 당사국의 공기업 유지 혹은 설립 인정
- 공기업이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도록 행동
- 공기업이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서 적용대상 투자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

4. 가격에서의 차이 (제154조)

- ▣ 독점 및 공기업이 공급 및 수요 조건 고려 등 통상의 상업적 고려에 따라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인정

5. 공기업 정의 (부속서 15-가)

- ▣ 캐측은 금융행정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법에 따름
- ▣ 우리측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름

지식재산

◇ 개요

- ▣ 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 WTO 지식재산권 협정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일부 마련
 - (상표권)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소리 등 비시각적인 상표에 대해서도 보호
 - (지리적 표시 보호) “고려홍삼”, “이천쌀” 등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협약) 이행 및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식재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간 지재권 협력 강화

◇ 상세 내용

상표 [제169조]

- ▣ (소리 상표)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
 - 등록 요건으로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 요구 금지

- ▣ (유명상표) 유명상표를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간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면 유명상표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
 - 특히,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되어 혼동 및 기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의 등록 취소 및 사용 금지 등이 가능
- ▣ (증명표장제도) 상품·서비스가 일정한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제도를 규정
 - ※ 증명표장제도의 예 : 미국의 Wool Mark, Cotton Mark 등
- ▣ (단체표장제도) 동종업자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 구성원 등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제도도 규정
 - ※ 단체표장은 주로 지방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판매하는 법인의 단체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예 : ○○영농조합법인의 “○○딸기”)

지리적 표시의 보호 (제16.10조)

- ※ 지리적 표시 : 상품의 품질, 명성, 기타 특성이 생산지의 기후 및 토양 등 생산지에 본질적으로 기인하는 명칭
- ▣ 지리적 표시로서 캐측은 우리나라의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을, 우리측은 캐나다 위스키, 캐나다 라이 위스키를 보호
 -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거나 “종류”, “유형”, “모조품” 등의 표현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6.11조)

- ▣ 로마협약,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세계 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WPPT) 준수 의무
- ▣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가 저작물·실연·음반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권리를 규정
-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사후(생존기간 포함) 또는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이후 50년 간 보호(국제조약 준용)
- ▣ 방송이나 공중 전달을 위하여 음반이 사용된 경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
- ▣ 저작물, 실연이나 음반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통제와 접근 통제로 구분
 - 이용통제(copy/use control):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부여한 저작물 이용행위(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를 통제하기 위한 것(예: CD 복제 방지장치)
 - 접근통제(access control):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접근하거나 그 저작물 자체를 향유(재생 및 작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예: 복제는 할 수 있더라도 불법복제된 것은 작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장치)
- ▣ 저작물 등의 식별을 위한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

-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와 제거·변경된 저작물 등을 전송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금지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 권리자, 이용조건 등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지칭

-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는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의 수신 또는 재배포 및 복호화*에 주로 도움이 되는 기기의 제조·판매 등을 위법행위로 규정

* 암호화한 것을 디코딩(decoding, 해독)하는 행위

특허 [제16.12조]

- 양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특허가 가능하도록 인정
- 인간,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및 치료 등, ② 식물 및 동물의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제법 등은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 가능

집행 [제16.13조]

- (일반적 의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행 절차를 법률에 따라서 보장하여야 함
- (저작자/소유권자 추정) 민사절차에서 그 성명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표시된 자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 ▣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지식재산권의 집행 관련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손해배상) 지식재산권에 관련 사법절차에서 고의 등으로 침해 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권리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함
 - 사법절차에서 저작권 등 침해 상품에 대한 폐기를 사법당국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함(침해 상품 제조에 사용된 도구 및 재료에 대해서도 보상 없이 폐기 등 처리 가능)
- ▣ (잠정조치) 사법당국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특별조치 (제16.16조)

- ▣ 온라인서비스공급자(OSP)에 대하여 저작권 등 침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정보를 권리자에게 신속히 공개하도록 명령 가능
- ▣ 인터넷 및 그 밖의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감소를 위한 조치 마련
 - 다만, 침해 감소 조치는 전자상거래 등 합법적 행위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며, 표현의 자유 등을 보호하여야 함

지식재산 위원회 (제16.18조)

- ▣ 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고, 양국 간 지재권 관련 협력을 감독

환 경

◇ 개요

- ▣ 양국은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제공,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무역/투자 장려 목적의 환경법 보호 수준 약화 금지 등 의무를 부과
- ▣ 환경 분쟁 관련, 정부간 협의, 환경 협의회, 고위급 협의를 거쳐 전문가 패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전문가 패널은 정책적 권고만 제시 가능

◇ 상세 내용

1. 규제권 및 보호수준 (제172조)

- ▣ 각국의 환경 보호 수준을 설정하는 권리 및 환경 관련 자국 법과 정책을 채택 또는 수정 할 수 있는 당사국 권리 인정
- ▣ 아울러 관련법과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제공 및 장려하고 적절한 경우 관련 다자간 환경 협정에 일치하도록 하며, 그 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2. 다자 간 환경협정 (제173조)

- ▣ 국제적인 환경 관리 및 협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무역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한 협의와 협력을 약속
- ▣ 양국 모두가 당사국인 다자 간 환경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약속을 확인

3. 무역 친화적 환경 보호 (제174조)

- ▣ 양국은 관련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해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토록 노력

4.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의 수준 향상 (제175조)

- ▣ 지속적,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금지
 - 다만, 관련 작위 및 부작위가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 더 우선 되는 환경 문제에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선량한 결정의 결과인 경우에는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님을 인정
- ▣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환경법 보호수준을 약화시키거나 감소시켜서는 안 됨

5. 구제 및 절차적 보장의 접근 (제177조)

- ▣ 자국 영토 내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이해 관계자가 제기한 법 위반 주장에 대해 환경법 집행 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적절히 고려함
- ▣ 환경법 이행을 위한 사법적, 준사법적 또는 행정 절차 제공
 - 자국법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된 이해 관계자에 상기 절차 및

법 위반에 대한 구제 신청에의 적절한 접근 보장

-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서면으로, 결정의 사유를 적시하여 적기에 당사자가 이용 가능토록 하고 국내법에 따라 대중에 공개
- 절차의 당사자에 판정에 대해 재심 및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공

6. 투명성 및 정보 공개 (제178조, 제179조)

- ▣ 이 장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된 자국 법률을 즉시 공표하고 이해 관계자 및 상대국에 법률(안)에 대한 사전 의견 제시 기회 제공
- ▣ 대중에 환경법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장의 이행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자국 영토내 거주하거나 설립된 인의 문의를 받고 이를 고려

7. 협력 (제17.10조)

- ▣ 환경협의회가 협력분야를 결정하고 이행을 검토

8. 제도적 장치 및 정부 협의 (제17.11조, 제17.12조)

- ▣ 이장의 이행을 위해 자국 정부내 공무원을 접촉선으로 지정
- ▣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고위 대표자로 구성된 환경협의회 설치하고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
- ▣ 정부간 협의는 상대국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시작 되고, 필요시 환경협의회,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진행

※ 상기 정부간 협의는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성립될 수 있는 실질 내용을 가진 사안에 국한

9. 전문가 패널 및 분쟁해결 (제17.13조, 제17.15조)

- ▣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분쟁해결 절차(제21장) 미적용
- ▣ 정부간 협의를 통해 환경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가 패널의 설치 요청 가능
 - ※ 전문가 패널 설치 요구 전에, 제소국은 자국이 심사 대상이 되는 사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범위의 환경법을 유지하고 있는지 고려
- 전문가 패널은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 보고서를 작성
 - ※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권고만을 포함할 수 있으며, 무역제재나 벌칙금과 같은 제재는 포함 불가
- 최종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이 의무 위반을 결정할 경우, 양국은 보고서 제출 90일 이내에 동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
 - ※ 전문가 패널의 권고에 대한 이행은 환경협의회가 모니터링

10. 캐나다 주에의 적용 (제17.16조, 부속서 17-나)

- ▣ 협정 발효 후, 캐나다가 협정상 의무를 부담하는 주를 명시한 문서를 외교채널을 통해 제공
 - 캐나다는 가능한 많은 주에 동 의무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상기 문서 수정시 6개월 이전에 우리측에 통보
- ▣ 캐나다는 상기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주정부의 요청에 의한 정부간 협의를 요청할 수 없음

노 동

◇ 개요

- ▣ ILO 기본 노동권 관련 원칙의 국내법 반영, 기본 노동권 보호 수준 저하 금지, 자국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법적으로 인정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절차 보장 등의 의무 규정
- ▣ 노동장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정부간 협의를 거쳐 검토 패널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패널 판정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계획 수립, 미이행시 금전적 평가액 지불

◇ 상세 내용

1. 일반적 의무 (제182조)

- ▣ 각 당사국의 헌법·노동법 존중, 자국 노동 기준의 수립권, 자국 노동법 채택·수정권, 노동정책 집행의 우선순위 설정권 인정
- ▣ 자국 노동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노동권과 관련된 원칙에 대한 보호 제공을 보장
 - ※ ①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② 모든 형태의 강제적 노동의 철폐 ③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④ 고용 및 직업상 차별 철폐 ⑤ 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고용 기준 ⑥ 직업상 부상 및 질병의 예방 및 보상 ⑦ 이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금지

2. 보호수준 저하금지 (제183조)

- 무역 또는 투자 관련 사안에 대해 노동법의 적용을 면제·이탈함으로써 상기 기본 노동권의 보호수준을 저하시키는 행위 금지

3. 정부집행 조치 (제184조)

- 적절한 정부조치를 통해 자국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
- 노동법 위반혐의 조사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당국이 그 요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보장

4. 사적 조치 (제185조)

- 법적으로 인정된 이해관계자에게 노동법 집행 및 노동법 위반의 구제가 가능한 재판 절차 제공

5. 절차적 보장 (제186조)

- 노동법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 및 구제 관련 절차는 공정, 공평, 투명해야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대중에 공개되며, 불합리한 수수료, 지연, 시간 제한을 수반해서는 안 됨
- 관련 절차의 최종판정은 서면으로, 가급적 근거를 명시하여, 적기에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자국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
- 당사자에게 판정에 대한 재심 및 정정을 추구할 권리 제공

6. 공공의 정보 (제187조)

- 대중에게 노동법 관련 공공정보 공개(집행 및 준수 절차 관련 정보 포함)

7. 장관급 협의회 및 접촉선 (제188조, 제189조)

- 노동 사안 관련 장관급 협의회를 설치, 협정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 이후에는 필요시 회합
 - 협정 발효일 후 5년 또는 협의회에서 달리 합의하는 기간 내에 협정의 운영 및 유효성 검토
- 노동 사안에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 내에 접촉선 지정

8. 공중의견제출제도 (제1810조, 부속서 18-나)

- 각 당사국은 자국 국민 또는 자국에 설립된 기관이 제기하고 상대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협정상의 노동 관련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공중의견을 접수하고 그 목록을 주기적으로 공개
 - 단, 국내 재판소나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 사안 배제, 사소하거나 가치 없는 사안 배제, 이전에 제출된 의견과 실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등 조건 적용

9. 협력활동 (제1811조, 부속서 18-가)

- 양 당사국은 노동章의 목적을 증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 시키며, 다른 쪽 당사국의 노동제도에 대한 각 당사국의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 협력활동 개시 가능
 - 양 당사국은 공통관심의 정책사안, 노사관계,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노동통계 등의 주제로 협력 가능하며, 자국의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의 견해를 고려

10. 일반 협의 (제18.12조)

- ▣ 각 당사국은 협정상의 노동 관련 의무에 관하여 상대국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 협의 요청 가능
- ▣ 일반 협의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노동 협의(장관급) 절차 이용 가능

11. 노동 협의 및 분쟁해결 (제18.13조, 제18.24조)

- ▣ 협정상의 노동 관련 의무 사안 논의를 위해 상대국에 장관급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응답
 - 노동 협의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요청 후 180일 이내에 종결
- ▣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분쟁해결 절차(제21장) 미적용

12. 검토패널 (제18.14조)

- ▣ 상대국이 협정상의 노동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동 사안이 노동 협의를 통해 합의되지 못한 경우, 검토패널의 소집 요청 가능. (패널위원은 3인으로 구성)
- ▣ 검토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사안이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이 있는지 판정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능 수행

13. 최초보고서 (제18.17조)

- ▣ 검토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 선정 후 180일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

※ 최초보고서는 △ 사실의 조사결과 △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의 협정상의 노동관련 의무 및 그 외 위임사항에서 요청한 사항의 준수 여부 판정 △ 사안에 대한 권고 포함

- ▣ 양국은 최초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검토패널에 제출 가능

14. 최종보고서 및 금전적 평가(제18.18조, 부속서 18-매)

- ▣ 검토패널은 최초보고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하며 동 보고서는 이후 120일 이내에 대중에 공개
 - 검토패널이 한쪽 당사국의 의무 불이행을 판정한 경우, 양 당사국은 검토패널의 권고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 계획 수립 가능
 - 행동 계획 미수립 또는 미이행 시, 금전적 평가액의 산정을 위한 검토패널의 재소집을 서면으로 요청 가능
- ▣ 재소집된 검토패널은 재소집 이후 90일 이내에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판정
 - 불이행 판정을 내리는 경우 검토패널은 불이행과 관련되는 부정적인 무역효과에 동등한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금전적 평가액을 산정
 - 금전적 평가액이 결정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제소국은 상대국에 금전적 평가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통보 가능
 - 금전적 평가액은 통보 이후 120일부터 시작하여 양 당사국 또는 검토패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불

15. 의무의 범위 (부속서 18-다)

- 협정 발효시 캐나다는 협정상 노동 관련 의무를 부담하는 주정부 목록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동 목록 수정시 6개월 전에 통보
 - 캐나다는 최대한 많은 주정부가 의무를 부담하도록 노력
- 캐나다는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정부의 이익을 주목적으로 한 협의 요청 불가
- 우리측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정부의 노동법관련 사안에 대해 패널 설치 요청 불가

투명성

◇ 개요

- ▣ 투명성 분야는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의무사항 규정
- ▣ 한·미 FTA 내용과 유사하나,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정

◇ 상세 내용

-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법률·규정·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히 공표하고, 이해관계인과 상대국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제19.1조)
- ▣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제19.2조)
- ▣ 행정절차 개시시에 가능하다면, 절차의 직접 대상이 되는 상대국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성격 및 법적근거, 쟁점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의견개진 기회 제공(제19.3조)
-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행정 처분을 재심하기 위한 공평

하고 독립적인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절차를 수립·유지
(제19.4조)

- 재판소/절차에서 각자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 및 기록에 근거한 결정이 제공되도록 보장

제도규정 및 행정

공동위원회 (제20.1조)

- 양국 장관급 대표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
 -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작업을 감독하며,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이 협정의 운영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검토
 - 공동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또는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개최되며, 회기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또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전자적 수단으로 개최

위원회 및 작업반 (제20.1조 제5항 및 부속서 20-가)

-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위원회, 실무작업반 및 기타 기구 설치 (제20.1조 제5항 및 부속서 20-가)
 - 위원회 : 상품무역위원회, 원산지규정 및 관세위원회, 위생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 표준관련조치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정부조달위원회, 지적재산위원회, 한반도역외

가공지역위원회

- 소위원회 : 임산물무역 소위원회, 자동차상품무역 소위원회
- 실무작업반 : 당사국 요청에 따라 상품 및 관련부품 제조에 관한 표준관련조치 실무작업반 설치
- 기타 기구 : 환경협의회, 노동협의회

협정 조정자 (제202조)

- ▣ 양국은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협정 조정자를 임명하고 상대국에 통보
 - 협정 조정자는 위원회, 작업반 및 기타기구의 업무 조정, 공동 위원회에 기타기구 설치 권고,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시행, 당사국간 의사소통 촉진
 - 필요시 서면으로 조정자 특별 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요청 접수 30일 이내에 회의 개최

분쟁해결

◇ 개요

- ▣ 국가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는 “①당사국간 협의→②패널의 설치→③패널의 심리→④패널의 판정→⑤패널 결정의 이행”의 순서로 진행
- ▣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를 포함한 그 밖의 통상협정 분쟁해결절차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소국은 분쟁해결절차 선택 가능
 - 다만, 피제소국이 자국의 조치가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1.3조)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이 협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제소국은 오직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 이용만 가능
 -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경우, 다른 절차의 이용을 불허
- ▣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 분쟁해결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
 - 패널 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패널 판정 불이행시 보상 또는 혜택의 정지 절차를 규정

◇ 상세 내용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범위 (제21.2조)

-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용됨
 - 협정 의무와의 불합치 조치
 - 협정 의무 불이행
 - 비위반제소
 - 비위반제소 적용범위 : 제2장(상품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원산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7장(무역구제),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4장(정부조달)
 - ※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방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제21.3조)

-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를 포함한 그 밖의 통상협정 분쟁해결절차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소국은 선택 가능
 - 다만, 피제소국이 자국의 조치가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1.3조)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이 협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제소국은 오직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 이용만 가능

당사국간 협의 (제214조)

- ▣ 제소국의 서면으로 된 협의요청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은 신속히 협의를 개시할 의무
 - 자동차 관련 분쟁의 경우, 자동차상품무역 소위원회에 회부 가능

주선·조정·중개 (제215조)

- ▣ 분쟁해결의 대안적 수단으로 양당사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주선, 조정, 중개 이용 가능

중재패널 절차 (제216조~제219조)

- ▣ 협의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소국은 패널설치 요청 가능
 - 중재패널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패널 위원의 의무에 관해 별도 규정(부속서 21-나, 패널 위원의 행동규범)
- ▣ 패널은 3인의 패널위원 임명 후 90일 이내(자동차의 경우 50일 이내)에 최초 보고서 제출
- ▣ 패널은 최초 보고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자동차의 경우 17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 제출

패널 구성

- 패널은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
- 패널설치 요청 접수일(이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국이 각각 패널을 1인 임명하고, 패널의장 후보를 최대 4명까지 추천
- 접수일 이후 60일내 의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7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의장을 선출

패널보고서의 이행 (제21.10조)

- ▣ 협정상 의무에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한 경우, 피소국은 해당 불합치 또는 무효화/침해를 제거해야 할 의무
- ▣ 분쟁 해결에 대한 합의 실패시,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보상협의를 개시

불이행-혜택의 정지 (제21.11조)

- ▣ 제소국은 요청일로부터 20일(자동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보상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자동차의 경우 10일) 이후, 다음 조치 가능
 - 피소국에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겠다는 서면 통보(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의 수준 명시)
 - 혜택의 정지 서면통보일 또는 제소국이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의 수준이 과도하다는 피소국의 요청에 대한 패널 판정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30일(자동차의 경우 10일) 이후에 정지 실행
- ▣ 피소국은 제소국이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의 수준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심패널 재소집 가능
 - 제소국은 패널이 판정한 수준의 혜택정지 가능
- ▣ 혜택의 정지는 불합치 조치가 철회 또는 수정된 때, 또는 양국이 분쟁 해결에 관하여 합의에 이른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적용

이행 검토 (제21.12조)

- ▣ 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의 준수를 위하여 피소국이 취한 조치의 존재 여부 또는 그 조치의 협정과의 합치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분쟁해결 패널에 회부 가능

- 패널은 혜택의 중지가 종료되어야 한다거나 중지된 혜택의 규모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권고 포함 가능

예 외

◇ 개요

- ▣ 협정문상 권리와 의무의 적용 예외로서 (1)일반적 예외, (2) 안보, (3)과세, (4)송금, (5)정보 공개, (6)문화산업, (7)WTO 면제(웨이버)를 규정

◇ 상세 내용

일반적 예외 [제22.1조]

- ▣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 (a)~(c)호의 일반적 예외적용
 - GATT 제20조와 관련 주해 적용 챕터 : 협정 제2장(상품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표준관련 조치), 제7장(무역구제), 제13장(전자상거래)
 - ※ GATT 제20조 상의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조치에 환경보호조치도 포함되고, 천연자원의 보존에는 고갈될 수 있는 천연 자원의 보존도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
 - GATS 제14조 (a)~(c)호 적용 챕터 : 협정 제9장(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1장(통신), 제12장(일시입국), 제13장(전자상거래)
 - ※ GATT 제14조 상의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조치에 환경보호조치도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

참고 : GATT 제20조/GATS 제14조상의 일반 예외조치

※ GATT 제20조상 예외조치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고갈될 수 있는 천연 자원의 보호,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 GATS 제14조상 예외조치

-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안전, 사기 행위의 방지, 사생활의 보호 등을 위한 조치

▣ GATT 제20조와 GATS 제14조상의 일반예외 조치 중 일부를 제8장 투자챕터에도 준용

-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안보 예외 (제22.2조)

▣ 국가 안보상의 예외조치 허용

-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비공개 가능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 또는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의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가능

과세 (제22.3조)

▣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협정과 여타 조세조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 과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ISD)가 적용되나,

- ISD 회부전 양국 조세당국(한국 : 기획재정부 , 캐나다 : 재정부)이 먼저 협의하고,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SD 제소를 진행

※ 「부속서 22-가(과세와 수용)」에서 과세조치가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송금 (제224조)

- ▣ 제8장(투자), 제9장(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0장(금융서비스) 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외국환거래법」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정보공개 (제225조)

- ▣ 협정상 어떤 내용도 공개될 경우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행정기관의 심의·정책 결정과정, 개인정보 또는 금융기관의 개인고객에 대한 사무 및 계좌를 보호하는 당사국의 법에 반하는 비밀 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 ▣ 또한, 이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과정 중에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 또는 여타 보호되는 비밀 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문화 산업 (제226조)

- ▣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예외를 규정

※ 단, 이 협정의 제1장 제6조(문화 협력)와 제2장 제3조(관세철폐)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제외

WTO 면제(웨이버) (제22.7조)

- ▣ 이 협정상 의무와 권리가 WTO 의무와 중복되는 경우, WTO 협정 제IX조에 따라 WTO가 채택한 면제 결정에 합치하도록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는 이 협정에도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서는 ISD 절차 원용 불가

최종규정

- 협정문의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및 각주(Footnotes)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제23.1조)
- 협정의 개정(제23.2조)
 - 양국은 협정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개정은 양국이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
 - 협정문에 통합되어 있는 WTO 협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국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
- 협정의 유보(제23.3조)
 - 협정에 대한 일방적인 유보나 일방적인 해석 불가
- 협정의 발효(제23.4조)
 - 협정은 양국이 각자의 요구되는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접수 30일 이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로 발효

- 협정의 존속 및 종료(제23.5조)
 - 한 당사국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일방 통보하면, 6개월이 경과한 후 협정 효력이 종료
- 영어본, 불어본 및 한국어본은 동등한 정보(제23.6조)

한 · 캐나다 FTA 상세설명자료

2014년 8월 인쇄 & 발행

발행 |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Tel. (044)203-5753

인쇄 | (주)나모기획
Tel. (02)503-5454

